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94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총괄 검토	4
1. 제정안의 주요내용	4
2.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9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3
1. 총칙(제1편)	13
2. 충청북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제2편)	18
3.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개발 및 기반 조성(제3편)	41
4.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조성(제4편)	61
5. 보칙 및 벌칙(제5편)	206
6. 부칙	2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엄태영의원 등 25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19.
3. 회부연월일 : 2026. 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소멸 위험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바이오·반도체·첨단제조 등 미래전략산업 기반과 청주국제공항·중부권 교통거점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중앙집권적 규제와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혁신과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특화지구 지정, 산업·SOC·환경·관광·농촌 분야의 특례를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를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법령 적용 특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법령상 ‘도·도지사·도의회·교육감·도조례’ 등에 충북자치도를 포함하도록 정함.

나. 지원위원회 설치 및 규제자유화 추진체계 구축(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규제 등록·심사·정비 등 규제혁신 절차를 도조례로 마련함.

다. 자치권·인사·지역인재 채용 등 자치역량 강화(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주민투표 청구요건 특례, 국가-지방 인사교류 확대, 지역인재 수습·임용 등을 규정함.

라. 자치재정 기반 강화 및 재정지원 특례(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주민참여예산, 균형발전기금, 국세 일부 교부 가능, 지방채 발행 특례, 투자심사·타당성조사 면제, 국·공유재산 사용·대부·매각 특례 등을 정함.

마. 감사위원회 설치로 자치감사 독립성 강화(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 위원 추천구조·임기·비밀유지·신분보장 등을 규정함.

바. 혁신성장 거점 조성 종합계획 및 인허가 의제(안 제32조부터 제41조까지)

종합계획 수립·결정·심의회 설치,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준공검
사, 조세감면·국고지원·예타면제를 규정함.

사. 특화지구·수자원·산림·문화관광·농촌·산업·SOC·탄소중립
특례 패키지(안 제42조부터 제133조까지)

특화지구 지정, 수자원·산림자원 활용, 역사문화권 및 관광 활성화,
스마트농업·귀농어 지원, 첨단산업(바이오·반도체·양자·드론·
UAM·SW) 육성, 교통·물류·공항 활성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
를 규정함.

아. 감독·벌칙·과태료(안 제134조부터 제140조까지)

자료제출·감독·청문·위임, 위반행위 벌칙 및 양벌규정·과태료를
규정함.

Ⅲ.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종전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전환하고,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재정·산업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본칙 137개 조문과 부칙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 정 사 항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충북자치도의 책무
제2편 충청북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제1장 충청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제6조	충북자치도의 설치
	제7조	충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제8조	충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제9조	충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2장 충북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	충북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제12조	규제자유화의 추진
	제3장 자치권 강화	
	제13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14조	국가와 충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15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제16조	특례부여 및 지원
	제4장 자치재정	
	제17조	주민참여 예산제도

조 문		규 정 사 항
	제18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제19조	재정건전화 책무
	제20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
	제21조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제22조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제23조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4조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5장 감사위원회	
	제25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26조	감사위원장
	제27조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제28조	자치감사계획 등
	제29조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30조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31조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제32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3편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개발 및 기반 조성	제1장 혁신성장 거점지역 조성계획	
	제33조	종합계획 수립
	제34조	종합계획의 결정
	제35조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종합계획 심의회
	제2장 충청북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종합계획의 시행	
	제36조	사업시행자
	제37조	인·허가등의 의제
	제38조	준공검사 등
	제39조	조세의 감면
	제40조	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제41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제42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4편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조성	제1장 충북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제43조	충북특화지구 지정·운영 등
	제2장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과 관리	
	제44조	수도법 등에 관한 특례
	제45조	댐 저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
	제46조	호수진흥지구 지정
	제47조	호수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제48조	호수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조 문		규 정 사 항
	제49조	하천수량 확보에 관한 특례
	제50조	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범사업에 관한 특례
	제51조	하천법에 관한 특례
	제3장 산림자원의 활용과 휴양복지의 융화	
	제52조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53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제54조	산림이용진흥지구개발계획
	제55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제56조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제4장 중원역사 계승 및 문화관광 교류거점 조성	
	제57조	중원역사문화권에 관한 계승 및 발전에 관한 계획
	제58조	중원역사문화권 지원에 관한 특례
	제59조	충북자치도 산성 육성 등
	제60조	충북자치도 산성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계획
	제61조	매장유산 발굴경비 지원에 관한 특례
	제62조	관광진흥에 관한 특례
	제63조	문화지구 지정·관리에 관한 특례
	제64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등 우선 지원 특례
	제65조	야간관광산업의 육성
	제66조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제67조	외국인 도시민박업 내국인 대상 운영 완화 특례
	제5장 지속가능한 농촌생태계 조성	
	제68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69조	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지정의 특례
	제70조	스마트농업데이터 정보활용에 관한 특례
	제71조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활성화에 관한 특례
	제72조	귀농어업인 초기 지원에 관한 특례
	제73조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제74조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제75조	충북자치도 미래돌봄특구 지정
	제76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제77조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제6장 지역주력산업의 성장동력 촉진	
	제78조	공공기관 우선 유치 및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설치 특례
	제79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제80조	충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조 문		규 정 사 항
	제81조	연구산업진흥단지 조성에 대한 특례
	제82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활성화 지원에 대한 특례
	제83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84조	복합단지의 지정
	제85조	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제86조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전문교육 연수기관 운영 등
	제87조	복합단지에 대한 지원
	제88조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육성
	제89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90조	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제91조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례
	제92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93조	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
	제94조	반도체,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제95조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제96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97조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98조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99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100조	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
	제101조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제102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제103조	대학 지원에 관한 특례
	제7장 지역간 연계협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망 확충	
	제104조	인접 자치단체간 간선 대중교통에 관한 지원
	제105조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관한 지원
	제106조	광역철도 지정에 관한 특례
	제107조	복합환승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제108조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제109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110조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제111조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112조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제113조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의 공동 구축
	제114조	충북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 공동 활용

조 문		규 정 사 항
	제115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특례
	제116조	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제117조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제118조	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관한 특례
	제119조	생활환경·경관의 개선
	제12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1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22조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제8장 탄소중립, 환경진화 등 지속가능발전	
	제123조	수열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농지법」 적용의 특례
	제124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제125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 지정 특례
	제126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특례
	제127조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제128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129조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130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131조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특례
제5편 보칙 및 벌칙	제132조	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제133조	감독
	제134조	청문
	제135조	권한의 위임
	제136조	벌칙
	제137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중전 충청북도의 폐지
	제3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4조	충청북도지사 및 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중전의 충청북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제6조	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중전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② 국무총리 소속 충청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어 충청북특별자치도 발전 및 규제자유화를 지원하며(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③ 주민투표, 인사·지역인재 채용, 재정, 감사위원회 설치 등 자치권·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를 두고(안 제13조부터 제32조까지), ④ 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안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⑤ 특화지구 지정, 산업·SOC·환경·관광·농촌 분야의 개발사업 및 각종 특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42조부터 제131조까지).

2.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제정안은 지방소멸 위험과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여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자치권·재정·산업·환경·관광·농촌 및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특례를 폭넓게 부여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충북자치도가 바이오헬스·반도체·첨단제조 등 미래산업과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교통·물류 기반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자치권 및 자치재정, 종합계획과 개발사업 추진체계, 특화지구, 산업·환경·관광·농촌·사회간접자본 분야의 특례 등 광범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북·강원·제주 특

별자치도 관련 법률과 유사한 기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충북의 지역적·산업적 여건에 맞는 자율성과 지역발전 기반을 확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¹⁾은 충청권을 중부권의 초광역 협력 단위로 설정하고 있는바, 충북자치도의 설치 및 특례의 운영은 충북의 특화발전과 함께 충청권의 산업·교통·생활권 연계 및 공동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충북자치도에 부여되는 특례가 충청권 차원의 초광역 협력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자치권 강화, 재정지원, 규제혁신, 지역개발, 전략산업 육성, 관광·농촌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특례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기존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는 조항은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과 지역 특화발전 기반의 확충 측면에서 수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일부 특례는 개별법상 사무배분 체계,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체계, 농지·산림·환경 등 전국적 기준의 유지, 인허가 절차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이양 또는 위임, 인허가 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조항은 기존 제도와 구별되는 실질적 특례인지,

1) “5극3특”이란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자치분권에 기반한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충청권·대구경북권·동남권·호남권의 5개 초광역권(5극)과 제주·강원·전북의 3개 특별자치도(3특)를 중심으로 경제권·생활권 및 행정·재정 기반을 구축하려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말함.

국가정책의 추진방향 또는 지원 의지를 확인하는 규정인지 그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전략산업 육성, 산업단지 및 특화지구 조성, 청주국제공항 및 교통·물류 기반 확충, 관광·농촌 활성화, 환경·에너지 분야 사업 등에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특례의 필요성과 별도로 전체 재정소요, 지원의 우선순위 및 다른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지역특화 발전과 5극·3특 기반의 지역주도 성장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서 독자적 특화 발전과 충청권 광역화에 기반한 동반성장 중 지역발전 방향에 관한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수렴 또는 주민투표 절차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충북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특화발전 기반 조성이라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개별 특례는 관계 법령 체계, 국가재정 여건, 전국적 기준의 유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종합하면, 제정안은 충북의 산업·교통·정주 여건 및 규제상 제약에 대응하여 자치권과 지역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충청권 내 혁신성장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뒷받침하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음. 다만 각 특례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충북의 지역적·산업적

특수성에 비추어 수용할 필요가 있는 특례와 개별법·국가정책 체계와의 조정이 필요한 특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특례의 범위와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충청권 초광역 협력과의 정합성, 관계 부처 협의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총칙(제1편)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 총칙은 종전 충청북도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충청북특별자치도(이하 “충북자치도”)로 설치하고, 국가의 입법·재정 지원과 충북자치도의 조례 정비·국가정책 협력을 통하여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충청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충청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충청북도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혁신,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며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충청북특별자치도(이하 “충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충북자치도의 이용·개발과 보전 및 충북자치도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운영목표와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충북

제 정 안

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종전의 충청북도가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충북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충북자치도의 책무) ① 충북자치도는 충북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충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충북자치도의 도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충북자치도는 충북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 포함)을 체결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충척 규정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 하에서 충청북도를 혁신성장 거점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음.

제1조(목적)와 관련하여,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이 공통적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면서 각각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목적조항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²⁾ 제

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

정안은 지속가능발전, 지역 활력 도모,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등 다소 일반적·보편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은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완화되는 규정’을 기준으로 예외를 설정하는 점은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³⁾

다만, ‘완화’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인 사안별로 달라질 여지가 있고,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국가유산청은 제정안 제3조가 “충북자치도에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 대상과 충돌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개별 법률체계를

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북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전북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범위하게 잠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한 특례는 구체적인 분야와 예외 법률을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제4조(국가 등의 책무)는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과 유사하게 국가의 입법·행정·재정 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제목은 ‘국가 등의 책무’로 하면서 본문에서는 ‘국가’만을 주체로 하고 있어, 유사 입법례와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할 때 조제목을 ‘국가의 책무’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⁴⁾

제5조(충북자치도의 책무)는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과 유사하게 국가정책에 대한 협력 및 조례의 제·개정·폐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한 국무총리와의 협약에 대하여 전북 등 특별자치도법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⁵⁾ 제정안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을 두고 국무총리의 협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협약의 법적 성격 및 절차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강원자치도의 책무) ①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강원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동 법에 자치경찰 조직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법률체계상 제5조제3항의 “자치경찰”에 관한 서술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충청북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제2편)

2-1. 충청북특별자치도의 설치(제2편 제1장)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2편 제1장은 종전 충청북도를 충북자치도로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및 사무위탁 특례를 두며, 다른 법령상의 도·도의회·도지사·교육감·도세 등의 용어에 충북자치도를 포함(또는 제외)하도록 하는 법령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편 충북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제1장 충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제6조(충북자치도의 설치) ①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북자치도로 한다. ② 충북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 ③ 충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7조(충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상·재정상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 시행 시 충북자치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충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사무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68조를 준용한다.
제9조(충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충북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 정 안

충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충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충청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충북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충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충북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충북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제2편제1장은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과 대체로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음. 다만, 동 장을 포함하여 제정법안의 조문 전반에서 ‘충북 특별자치도’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바, 법률 제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충청북특별자치도’ 또는 약칭 ‘충북자치도’로 용어를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2-2. 충북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제2편 제2장)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2편 제2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충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과 규제자유화를 심의·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정비 및 도조례에 따른 규제등록·심사·재검토 등을 통하여 충북자치도를 규제자유화 선도지역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장 충북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충북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충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충북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충청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충북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충북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충북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충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 정 안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충북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충북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충북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구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충북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제2편제2장은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⁶⁾

다만,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이 개정되어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가 ‘30명 이내’로 증원된 점을 감안할 때, 충북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다른 특별자치도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도 위원회 정수를 늘려, 최근의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충북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자문 위원회로서 「정부조직법」 제4조7)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것이

-
- 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시행 2026.10.22.)
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북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바람직하며, 제6항의 실무지원단과 관련하여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문위원회 등은 사무기구를 둘 수 없으므로,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의 사업 부서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교육부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교육자치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도지사에게 준하여 도교육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자치권 강화(제2편 제3장)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2편 제3장은 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 국가와 충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지역인재 선발채용, 시·군에 대한 특례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북자치도의 자치권 및 인사·조직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장 자치권 강화
제13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국가와 충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 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충북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북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

제 정 안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16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충북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충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제2편제3장은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체계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⁹⁾ 충북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주민투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9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전북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와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제108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전북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제14조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준하여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4. 자치재정(제2편 제4장)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2편제4장은 주민참여예산과 균형발전기금 설치, 재정건전화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충북자치도에 교부하고, 지방채 발행, 투자심사·타당성조사 면제, 국·공유재산 사용·수익·매각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충북자치도의 자치재정 기반과 대규모 투자 여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4장 자치재정
제1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재정건전화 책무) ① 도지사는 재정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조(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도에서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충북자치도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②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도에서 징수하는 법인세 총액의 100분의 50을 충북자치도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충북자치도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50을 충북자치도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충북자치도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 생활권 및 지역 간 경쟁적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여 충북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연계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

② 균형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① 도지사는 충북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충북자치도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충북자치도의 요청이 있으면 지방채를 우선 인수 또는 매입하여야 한다.

제23조(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제24조(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제 정 안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제2편제4장은 주민참여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 재정건전성 책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하여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

다만, 제20조(국세 교부 특례), 제21조(균형발전기금), 제23조(투자심사 면제 특례)는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에서는 직접 대응되는 규정을 찾기 어려우며, 제22조(지방채 발행 특례) 및 제24조(국·공유재산 특례)는 제주특별법에 유사한 제명의 조항이 존재하나,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국가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제20조)

제20조는 충북자치도에서 징수되는 일부 양도소득세¹⁰⁾, 도내 징수 법인세 총액의 50%, 도내 징수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를 충북자치도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에는 개별 국세에 대하여 징수 지역 및 비율을 특정하여 직접 교부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음.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국가 일반재원 및 지방교부세 재원의 기반이 되는 주요 국세인바, 특정 광역자치도에 대하여 징수분의 일정 비율을 직접 교부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세입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재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조정 기능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 운영 및 지역 간 재정 형평성,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유사 요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용(제21조)

제21조는 도지사가 충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10)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한함.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지자체 상호 간 연계·협력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3조¹¹⁾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재원·용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에 위임하려는 것임.

지방기금법 제3조는 기금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및 설치요건을 두어 기금 난립을 방지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 중심의 재정운영 원칙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바,

제정안은 이러한 통제장치를 배제함으로써 도지사 및 도의회의 재량이 크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지방기금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제22조)

제22조는 「지방재정법」 제11조¹²⁾에도 불구하고 외채 발행 및 지방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12)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¹³⁾ 허용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제주특별법은 외채와 지방채 발행 특례를 두고 있는 반면,¹⁴⁾ 전남광주특별법¹⁵⁾은 지방채 발행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안 제2항은 충북자치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지방채 우선 인수·매입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지방채 관련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 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황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13)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여야 함.

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8조(지방채 발행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특별시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조문이 중앙·지방 간 재정 책임 분담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및 외채 발행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처럼 「지방재정법」 체계 하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시 행안부 협의·승인과 외채 발행 사전 승인 절차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제23조)

제23조는 「국가재정법」 제38조¹⁶⁾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제37조의2에

16)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중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하 생략)

다른 중앙·지방 재정사업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¹⁷⁾를 충북자치도 발전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10년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임.

충북자치도에 한정하여 일정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개별 기본법의 취지, 재정사업 관리체계와의 정합성, 다른 지역·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투자심사·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경우 제도의 형해화 우려가 있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현행 제도 하에서도 면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면제 특례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7)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하 생략)

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매각 특례(제24조)

제24조는 제주특별법 제165조¹⁸⁾와 유사하게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의 일반 원칙(경쟁입찰, 기간·용도 제한 등)에 대한 예외를 두어,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장기간 사용·수익·대부·매각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주특별법이 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 등 특정 지구에 입주 하는 기업·국제기구 등으로 특례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정안은 충북자치도 전역에서 제36조의 사업시행자¹⁹⁾를 대상으로 국·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¹⁸⁾에 입주하는 기업·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9) 제정안

제36조(사업시행자)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공유재산의 수익계약에 의한 사용·수익·대부·매각 및 장기 사용·수익 등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수혜 대상이 제주특별법의 입법례보다 확대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사업자에게도 국·공유재산이 경쟁절차 없이 수익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수익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그 대상과 사업 범위, 사업시행자 선정 및 재산 처분 과정의 경쟁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24조의 공유재산 특례 규정을 제3편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개발 및 기반 조성’에 두어 다른 유사 특별법과 체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

또한 특례 적용 대상을 공공성을 갖춘 사업시행자(안 제36조제1호~제4호²⁰⁾)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 종료 시 분쟁과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원상회복 의무를 법에 명시하여 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0) 제36조(사업시행자)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5. 감사위원회(제2편 제5장)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2편제5장은 도지사 소속으로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감사 계획의 수립·실시 및 결과처리, 징계·문책 시효정지,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5장 감사위원회
제25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⑤ 충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제 정 안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6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도지사가 임명하려는 직원이 소방공무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8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 정 안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충북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31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28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제 정 안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32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제2편 제5장은 도지사 소속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자치감사 절차, 감사위원장의 임명·임기, 감사위원이 구성 등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의 감사위원회 규정과 전반적으로 동일한 체계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교육부는 제25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와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된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의 입법례와 같이 도교육감이 임명한 도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이 교육·학예분야 자치감사를 수행하는 방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3.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개발 및 기반 조성(제3편)

3-1. 혁신성장 거점지역 조성계획(제3편 제1장)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3편 제1장은 도지사가 공청회,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및 도의회 동의를 거쳐, 충북자치도의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편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개발 및 기반 조성 제1장 혁신성장 거점지역 조성계획
제33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북자치도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조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충북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과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항·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 평화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6.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7. 향토문화 보존과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8.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자연생태·생명·환경 증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토지·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11.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2. 지역사회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 수자원·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4. 지역정보화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15. 각종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6. 광역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3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충북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북자치도에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4.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5.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충북특화지구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 ③ 종합계획심의회 위원장은 도지사이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 ④ 종합계획심의회 당연직위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제3편제1장은 도지사 소속 종합계획심의회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통하여 충북자치도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의 종합계획·심의기구 규정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체계와 내용으로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이 「교육자치법」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정책, 영·유아 보육·교육,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교육 및 인재 관련 계획 수립 시 교육부장

관 및 교육감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하여 중앙부처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므로, 제33조제2항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산림청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2. 충청북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종합계획의 시행(제3편제2장)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3편제2장은 충북자치도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주체와 인허가 의제, 준공검사, 조세·개발부담금, 국고보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각종 재정·절차상 특례를 규정하여 관련 개발 사업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제 정 안
제2장 충북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종합계획의 시행 제36조(사업시행자)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37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

제 정 안

당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형질 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0.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군수 외의 자에 대한 도로의 정비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지정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제 정 안

13.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 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0.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4.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5.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다만, 같은 조에 따른 공고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2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 정 안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3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3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 정 안

제38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개발사업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개발사업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인 국가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완료공고를 하는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조세의 감면) ① 국가는 충북자치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연관산업기관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제 정 안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4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북특화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입주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충북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충북자치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충북자치도 사업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
2. 여객 및 물류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필요한 활주로, 터미널 등 청주국제공항의 공항개발사업
3. 충북자치도의 균형발전 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4. 지역균형발전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다목적 돛구장, 충북아트센터 등 문화체육 기반시설 조성 사업

나. 검토의견

제3편제2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제36조), 인·허가 의제 및 준공검사 절차(제37조·제38조), 조세·개발부담금·국고보조·예비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재정·절차 특례(제39조~제42조)를 규정하여 충북자치도 혁신성장 관련 사업을 신속·집중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러한 “개발사업+사업시행자+인·허가 의제+조세·부담금·보조금 특례” 결합 구조는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개발특례와 유사한 체계를 취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 사업의 범위 설정 방식과 일부 재정·규제 특례의 강도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이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사업시행자(제36조)

제36조는 제33조에 따른 충북자치도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 ④ 지방공기업, ⑤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 및 ⑥ 이들 공공부문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공부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공공·민간 합작 법인을 사업시행

자로 인정하는 점에서,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특정 개발지구·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구성 방식과 기본 유형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다른 특별법들이 대체로 산림이용진흥지구, 투자진흥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등 개별 조항에서 정의하는 특정 지구·사업군에 대하여 그 지구·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해당 지구·사업에 한정하여 인·허가 의제 및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인 반면, 제정안 제36조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전반을 상정하여 그 시행자를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종합계획이 산업·SOC·관광·농림수산·환경·에너지·복지 등 도정 주요 분야를 폭넓게 포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제33조제1항 각호)을 고려하면,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다른 지역 특별법에 비해 비교적 넓게 설정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구조는 제37조의 인·허가 의제, 제38조의 준공검사 의제,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재정·절차 특례와 결합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유형·분야의 범위가 기존 지역 특별법보다 상대적으로 넓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장에서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시

행자의 범위를 보다 협소하게 설정하거나, 개별 특례 조항에서 인·허가의 의제 및 각종 특례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인·허가등의 의제(제37조)

제37조는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외)가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건축, 농지·산지·산림, 도로·하천·하수도, 공장설립, 관광지 조성, 산업단지·도시개발·택지개발, 공유수면, 어항개발 등 다수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이러한 인·허가 의제 방식은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 및 전남 광주통합특별법 등 다른 지역 특별법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행정기본법」 제24조 이하 준용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기본 구조는 유사함.

다만, 다른 특별법들은 통상 특정 개발지구·사업군별 조문에서 그 지구·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인·허가 의제 대상을 함께 규정하여, 인·허가 의제가 적용되는 사업 범위를 “지정된 지구·사업 유형”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제정안은 제36조에서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전체를 대상

으로 사업시행자를 규정하고, 제37조에서 이 종합계획상 사업을 전제로 인·허가 의제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이므로,

조문상으로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의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설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한편, 제37조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범위 안에서만 인·허가 의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행정기본법」 제24조21)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각 개별 법령이 요구하는 심의·의견청취 등의 절차가 생략되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²²⁾ 특히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제

21)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22) <국토부 수정의견(안)>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당 법령에서 정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의 의제는 법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제6호)가 제24조의 국·공유재산 특례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정합성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7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유 업무이며,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같은 항 제24호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민간사업자는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인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같은 항 제34호의 경우 같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사전협의(제17호), 산림보호구역 행위허가·지정해제(제20호), 입목벌채 허가·신고(제22호 일부)에 대하여는 전국 단위의 통일적 기준 및 산림·환경보전 필요성을 이유로 인·허가 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3) 준공검사 등(제38조)

제38조는 사업시행자가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되, 제37조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상의 준공검사·준공인가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준공검사·준공인가 의제 구조는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의 입법으로 보임.

(4) 조세 및 개발부담금 감면(제39조·제40조)

제39조는 충북자치도 사업 및 충북특화지구 입주기업·근로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감면 범위와 수준은 해당 조세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정안 자체가 독자적으로 감면 범위를 확장하기보다는 “조세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문언상으로는 다른 특별법의 조세 특례와 유사한 틀로 볼 수 있음.

다만,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특례의 도입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개별법 차원의 규정 필요성 및 실익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제40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²³⁾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²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개발부담금 면제를 “충북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개발사업”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전반에 대해 허용함으로써, 개발부담금 감면 범위를 상당히 넓게 설정할 수 있는 조문 구조를 취하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등 일부 특별법의 경우 부담금 감면·면제를 규

2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동일인이 연결(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납부 의무자)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하면서도 대상 지역·사업, 관계 법률에 따른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거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²⁵⁾ 제정안 제40조는 개발부담금 감면의 재량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부여하는 특례로 평가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감면은 개발이익환수법 체계 안에서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다른 특별법과의 형평성,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취지, 지방재정·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 범위 및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제41조)

제41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제10조²⁶⁾에 따

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124조(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등)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2조(부담금 등의 감면)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

른 차등보조율 및 개별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보조금법은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 범위 안에서만 보조율 조정을 허용하고 있고, 제주특별법은 특정 계획·사업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 보조율을 허용하는 반면,²⁷⁾ 제정안 제41조는 “충북자치도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보조율 인상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국가 보조금 제도에 미치는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특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제42조)

제42조는 SOC·공항·바이오·문화체육 인프라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하여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새만금·가덕도신공항 등 개별 국책사업에 예타 면제 근거를 둔 특별법들의 입법례를 참조한 것으로 보임.

다만, 예타 제도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27) 「제주특별법」

제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제236조제4항에 따라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6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④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융자하거나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증하는 기본 장치로 기능하고 있고,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는 예타 면제 특례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포괄적인 면제 가능성을 규정한 제42조는 예타 제도의 취지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 전체 재정을 종합적·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체계 안에서 운용되어야 하므로, 개별 특별법에 특정 분야의 예타 우선 선정이나 면제 규정을 두는 경우 예타의 형해화 및 유사 입법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조성(제4편)

4-1. 충북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제4편제1장)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4편제1장은 도지사가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호수진흥지구·산림이용진흥지구·문화지구·투자진흥지구 등 이른바 ‘충북특화지구’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지구에 대한 승인 효력 상실 요건과 지정 해제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4편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조성 제1장 충북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제43조(충북특화지구 지정·운영 등)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북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충북특화지구 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 조제1항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함께 거쳐야 한다. 1. 호수진흥지구 2. 산림이용진흥지구 3. 문화지구 4. 투자진흥지구 5. 그 밖에 필요한 지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충북특화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북특화지구는 고시된 날부터 5년,

제 정 안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북특화지구가 충북자치도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충북특화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충북특화지구 지정과 고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제43조는 충북특화지구라는 상위 개념을 설정하고, 제46조, 제53조, 제63조, 제83조 등에서 호수진흥지구, 산림이용진흥지구, 문화지구, 투자진흥지구 등 각 특화지구별로 지정 요건, 환경·재해·공익성 기준 및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체계는 지역 자원과 산업·문화·투자 기능을 유형별로 특화·집중 육성한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특화라는 제정안의 정책목표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별 특화지구에 관한 구체적 특례의 필요성 및 적정성은 각 조문에서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나, 제43조제1항제5호가 “그 밖에 필요한 지구”를 규정함에 따라 도지사의 재량에 의해 새로운 유형의 특화지구 추가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특화지구 제도가 포괄적인 규제완화 수단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그 범위와 요건을 보다 구체

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산림청은 제1항제2호(산림이용진흥지구)에 대하여 산림의 중요성과 난개발 우려, 유사 입법 제28)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지구 지정 요건·절차, 사업시행자의 지정·해제,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별도의 조문 체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0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제381조(진흥지구개발계획), 제382조(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383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384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제385조(진흥지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386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387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388조(준공검사)

4-2.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과 관리(제4편 제2장)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4편제2장은 충북특화지구를 중심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부 행위 제한 완화, 호수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인허가 의제, 하천수량 확보, TOC 수질총량관리 시범사업, 댐 저수 사용 특례 등을 통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수생태계 보전, 호수관광 및 친수공간 조성을 지원하려는 내용임.

제 정 안
제2장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과 관리 제44조(수도법 등에 관한 특례) 충북특화지구에서는 「수도법」 제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환경관리계획(공공처리장으로 오수 유입,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식품접객업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설치 및 행위 제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5조(댐 저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대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의 하천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댐 저수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6조(호수진흥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호수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호수진흥지구로

제 정 안

지정할 수 있다.

1. 대상지역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자연자원과 자연생태 및 경관이 호수관광을 추진하는 데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상지역과 주변 자연환경 여건이 호수관광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발압력과 환경영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민간투자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인구소멸 대응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5.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6. 자연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7. 호수진흥지구에 관한 투자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호수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호수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호수진흥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호수진흥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호수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호수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재해 대책 및 구조·구급 계획
8. 조성토지 등의 사용·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9.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0.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1.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8조(호수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① 호수진흥지구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

제 정 안

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4.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5.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호수진흥지구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경사도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하천수량 확보에 관한 특례) ① 충북자치도에 포함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소하천 등에 「물관리기본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전한 물순환과 수생태환경 보전 등을 위한 하천유지유량 등 수량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물관리기본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하천수량 확보에 필요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시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0조(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범사업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해 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시 충북자치도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 정 안

제51조(하천법에 관한 특례) 「하천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관할구역 내 국가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1) 수도법 등에 관한 특례(제44조)

제44조는 충북특화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오수의 공공처리장 유입,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의 식품접객업·관광숙박업 등 시설 설치 및 행위 제한을 「수도법」 제7조²⁹⁾,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³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29)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각 호 생략)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이하 생략)

30)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³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조항은 충북특화지구 내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관광·숙박·식음시설의 입지를 일정한 환경보전조치를 전제로 부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호수·수변 관광 및 지역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제한과 한강·금강 수계법상 수변구역 행위제한은 상수원 수질보전 및 상·하류 간 협력에 기반한 수계 관리체계의 주요 수단으로 운용되어 왔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는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
 -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팔당·대청호 등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수립의 근거로서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음.

따라서 충북특화지구 내에서 상기 법령에 따른 상수원·수변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경우, 상류 지역 개발행위가 하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기존 수계별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제도와와의 정합성, 타 수계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적용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관리지역은 충북 특화지구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하류 수계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제도로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2) 댐 저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제45조)

제45조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하천환경개선을 위하여 댐 저수를 사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댐 저수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댐건설관리법 제35조제1항은 댐 저수 사용료의 수납 주체를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로 규정하고,³²⁾ 이들이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45조는 이와 별도로 시·도지사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댐 저수 사용료는 다목적댐 건설비·관리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저수를 사용하는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운용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지역·목적은 이유로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 다른 댐 저수 사용자와의 형평성, 댐사용권자의 재정적 이익 및 권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댐 저수 사용료 징수 권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아닌 댐사용권자에게 있고, 특정 지역의 사용료 면제는 댐용수 전국 동일요금제 운용 취지에 반하며, 댐용수 사용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지역에 하천환경개선 용도의 댐용수 전액 면제는 용수공급자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3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①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및 수납기한 등을 정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호수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제46조~제48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는 도지사가 관광자원과 자연경관이 우수한 호수 주변 지역을 호수진흥지구로 지정하고(제46조), 토지이용·교통·기반시설·환경·재해·보상·재원조달 등을 포함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제47조), 그 지정·고시를 통하여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수도·하수도·하천계획 및 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 등을 일괄 의제하며, 산지전용 경사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48조).

이는 호수 주변의 관광·휴양 기능 강화, 민간투자 촉진 및 낙후지역 개발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호수진흥지구는 지정 자체로 다수의 지정·계획 변경과 규제완화 효과가 결합되는 구조이므로, 지정 단계의 절차적 통제장치가 법률상 보다 명확히 드러날 필요가 있음.

제35조제1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제4항에 따르면 충북특화지구의 지정·해제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호수진흥지구도 충북특화지구의 한 유형으로서 현행 제정안 체계상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제46조는 지정·변경·해제의 절차·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할 뿐 종합계획심의회 심의절차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절차 구조가 개별 조문상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려움.

전북특별법의 산악관광진흥지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산림이용진흥지구와 같이 유사한 지구의 경우 개별 조문에서 종합계획심의회 또는 기본계획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호수진흥지구에 대해서도 지정·변경·해제 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46조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48조제1항은 호수진흥지구 지정·고시 시 「관광진흥법」, 「도시개발법」, 「수도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 등 관계 법령상 여러 지정·계획 변경을 포괄적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제48조제2항은 인·허가의 제의 기준 및 효과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³³⁾를

33)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 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관련 행정기관은 자기 법령에 위반되는 협의에 응할 수 없으므로, 인·허가 의제 규정 자체가 곧바로 개별 법령상 실체적 기준과 절차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다만, 호수진흥지구 지정만으로 다수의 계획·지정이 일괄 처리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관계 기관 협의 및 심의 과정에서 환경·수질·재해 등에 관한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적 요건과 운영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호수진흥지구 지정 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을 의제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이 요구하는 주민·지자체 의견조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령상 절차를 실제로 거친 경우에 한하여 의제 효과가 발생하도록 법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산림청은 제48조제3항³⁴⁾과 관련하여, 재해 예방과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현행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③ 호수진흥지구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경사도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북·강원 특별법에서도 호수진흥지구와 유사한 지구에 대해 경사도 기준 완화 특례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제3항 특례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48조제1항제3호에 대하여,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수립·변경은 확정된 개발계획에 대한 용수 수요를 산정하고 용수공급계획 및 수도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해당 호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같은 항 제4호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중 중요사항 변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특례 대상을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제5호의 하천구역 결정 및 하천기본계획 변경은 국민의 안전 및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 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같은 항 제6호는 지역개발·오염배출량에 대한 적정·통합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계획의 수립·변경 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특정 지역만 승인 절차를 제외하는 것은 제도 운영상 불가하다는 입장임.

(4) 하천수량 확보에 관한 특례(제49조)

제49조는 충북자치도에 포함된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물관리기본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건전한 물순환과 수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하천유지유량 등 수량 확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물관리기본법」 제17조제1항³⁵⁾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물관리기본법」 제17조제1항은 “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물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49조는 이러한 단서에 따라 충북자치도 내 하천유지유량 등 수량 확보 사업에 관하여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상 예외를 설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이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는 제정안과 유사한 물관리 비용 우선지원 특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충북자치도만을 대상으로 한 “우선 지원” 예외가 물관리 비용부담 원칙, 타 시·도와의 형평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물관리 재정분담 구조와 조화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물관리에 드는

35) 「물관리기본법」

제17조(비용부담) ① 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물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49조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5) 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범사업 특례(제50조)

제50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강수계법, 금강수계법 및 낙동강수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하여 TOC(총유기탄소)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경우, 충북자치도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TOC 총량관리는 기존 BOD·COD³⁶⁾ 중심 관리로는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녹조 등 수질문제에 보다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음.

따라서 충북자치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제도 도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려는 취지 자체는 수질관리 정책 실험의 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충북자치도에 대한 시범사업 우선 지원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한강·금강·낙동강 등 각 수계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수립

36) **TOC**(Total Organic Carbon): 물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구성하는 탄소의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중 유기물 오염 정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질지표임.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물속 유기물이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산소의 양을 의미하며, 값이 클수록 유기물 오염도가 높은 것을 뜻함.

COD(Chemical Oxygen Demand): 물속의 유기물 등 피산화성 물질을 강한 산화제로 화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소비되는 산소의 양으로, BOD와 함께 폐수 중 유기물 함량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임.

과 유역물관리위원회 등의 심의 과정에서 시범지역 선정과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소관 행정기관 및 위원회의 재량을 제약하여 정책 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다른 시·도 역시 유사한 시범사업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북자치도만을 대상으로 한 “우선 지원” 규정이 유역 간 형평성 및 수질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조화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TOC 도입에 따른 시범사업 지원 여부, 지원 기준, 방식 등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필요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 대상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6) 하천법에 관한 특례(제51조)

제51조는 「하천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관할구역 내 국가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친수지구³⁷⁾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개발계획과 국가하천 수변공간 활용을 보다 긴밀하게 연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37) 친수지구(親水地區): 하천기본계획에서 하천구역을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친수지구는 산책·자전거·관광·상업·레저 등 친수활동을 위하여 하천을 점용·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하는 구역을 말함.

현행 「하천법」상 국가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권한은 하천관리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만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으로서 계획의 수립·변경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³⁸⁾

제51조는 이러한 권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국가하천에 관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 관리청 권한 구분이라는 「하천법」의 기본 체계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포괄적 요건 아래 도지사에게 국가하천 기본계획 변경 및 친수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하천 관리권을 전제로 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책임·권한 구조와 조화되는지, 그리고 국가·지방 간 하천관리 사무분담 원칙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법」 제8조 및 제25조에 따라 국가하천의

38)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이수·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관리청인 기후부 장관이 수립하는 사항으로, 도지사
가 필요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천법 체
계와 충돌한다는 입장임.

4-3. 산림자원의 활용과 휴양복지의 융화(제4편제3장)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4편제3장은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을 통하여 산지·산림·자연공원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계획 수립과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하여 산림 자원의 보전과 이용, 휴양·관광·산업 기능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임.

제 정 안
제3장 산림자원의 활용과 휴양복지의 융화 제52조(「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충북특화지구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관리법」 제12조와 제18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산지관리법」 제8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의 기준과 요건 등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충북특화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 가운데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에 필요한 시설

제 정 안

제53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산지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림의 보존과 이용을 조화롭게 추진하면서 연계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

1.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산림이용진흥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5.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이용진흥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산림이용진흥지구개발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산림이용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림이용진흥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재해 대책 및 구조·구급계획
8. 산림이용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 조성 토지 등의 사용·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 정 안

제55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①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친환경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에 한정한다)
7.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8.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6조(「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충북자치도에 포함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숙박시설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완화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1)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제52조)

제52조는 충북특화지구에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행위제한·산지전용 기준 및 「산림보호법」상 일부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휴양·문화·정원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조문의 적용범위가 ‘충북특화지구’ 전반으로 규정됨으로써, 산림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진흥지구·문화지구 등까지 보전산지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산림보호구역 해제 특례가 동일하게 허용될 수 있는 구조인바, 이는 제4편제1장이 호수·산림·휴양 중심의 지구를 전제로 하는 체계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대상 범위가 넓게 설정된 측면이 있음.

전북특별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도 산악관광진흥지구·산림이용진흥지구와 같이 산림·환경을 핵심 자원으로 하는 지구에 한정하여 산지전용·산림보호구역 관련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산림규제 완화 특례의 적용 대상을 호수진흥지구·산림이용진흥지구 등 산림·휴양 기능과 직접 관련된 충북특화지구 유형으로 한정하거나, 특례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좁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산림청은 국토 전반의 산지 생태축·재해·경관 관리를 위하여 일관된 산지관리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처럼 충북특

화지구 전반에서 보건산지 행위제한, 구역 지정, 산지전용 허가·신고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전북·강원특별법과 같이 적용 대상을 산림이용진흥사업으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산지전용허가기준(경사도 및 표고)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완화 특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제53조~제55조)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는 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고(제53조), 토지이용·교통·기반시설·환경 등을 포함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며(제54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고시를 통해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관광지 지정 및 하천·수도·하수도 계획 변경 등을 일괄 의제하도록 함으로써(제55조), 산림의 보존과 이용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동시에 연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전북특별법의 산악관광진흥지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산림이용진흥지구 등에서도 도지사 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구별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개발·관광지 지정 등 일부 인·허가를 의제하는 방식의 입법례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과, 산림·관광·지역개발을 연계하는 일정 수준의 인·허가 의제를 허용하는 입법 구조는 특별자치단체에 인정되는 산림·관광 정책 특례의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55조는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관광지 지정,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및 수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 광범위한 인·허가를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만으로 일괄 의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인·허가 의제에 관한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기준을 전제로 하더라도, 각 개별 법령이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지자체 의견수렴, 위원회 심의 등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기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전북·전남광주 관련 특례의 인·허가 의제 범위 및 적용 조건과 비교하여 제55조의 의제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산지전용·산림보호구역 특례(제52조)와 결합될 경우 산림·환경에 대한 규제 수준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책적·환경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산림청은 산림이용진흥지구의 난개발 최소화와 체계적인 산지 관리를 위하여, 법률에서 지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개발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고시·열람 및 사업시행 조사 등 기본적인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사항만 도조례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제53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³⁹⁾

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유사 입법례)

제380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

또한 제54조와 관련하여, 산림이용진흥지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구 지정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와 지역주민·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국토교통부는 제55조와 관련하여,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시 도시개발 구역·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인·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등 개별 법령이 요구하는 의견조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심의·의견청취 절차를 실제로 이행한 경우에만 하여 의제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산림이용진흥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5.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이용진흥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381조에 따른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한 후 기본계획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진흥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국가와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는 진흥지구에서의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⑦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83조에 따라 지정한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⑧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⑨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⑩ 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구역의 결정 및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은 국민의 안전 및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하천관리의 주요사항이므로 제55조제1항제6호는 삭제할 필요가 있고,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에 관한 같은 항 제7호 역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제8호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중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제56조)

제56조는 충북자치도 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서,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⁴⁰⁾ 관계 중앙행정

40)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공원자연환경지구

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라. 농업·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

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숙박시설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자연공원 내에서 보전 필요성이 큰 완충공간이고, 공원마을지구는 공원구역 안 마을지역으로 최소한의 생활기반 정비만 허용되는 구역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지구에 대한 숙박시설 등 규제 완화는 자연공원 보전과 체류형 관광 수요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서는 용도지구별 행위제한을 두고 있고,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전국 자연공원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특정 지역에 한하여 예외적 특례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임.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호안(護岸)·방화(防火)·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아. 군사훈련 및 농로·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원마을지구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다.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라.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内工業)

4-4. 중원역사 계승 및 문화관광 교류거점 조성(제4편제4장)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4편제4장은 중원역사문화권과 충북 산성을 보존·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원을 규정하는 한편, 문화지구 지정과 각종 문화·관광·야간관광·국제회의·도시민박 특례를 통하여 충북자치도를 역사·문화·관광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내용임.

제 정 안
제4장 중원역사 계승 및 문화관광 교류거점 조성
제57조(중원역사문화권에 관한 계승 및 발전에 관한 계획) ① 도지사는 중원역사문화권에 관한 계승 및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원역사문화권에 관한 계승 및 발전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치·면적 2. 중원역사문화권 내의 자원 실태조사 및 연구 계획 3. 중원역사문화권의 자원의 보전과 활용 계획수립 4. 충북자치도와 인접 시·도 간의 공동연구 사항 5. 보존 및 활용 연구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8조(중원역사문화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유산청장은 도지사와 공동으로 중원역사문화권의 정체성 확립,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제 정 안

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 등 역사문화권 보존, 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충북자치도 산성 육성 등) ① 국가유산청장과 도지사는 산재해 있는 충북자치도 산성의 발굴과 보전 등을 위해 상호협력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충북자치도 산성의 발굴과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0조(충북자치도 산성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계획) ① 도지사는 충북자치도 산성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충북자치도 산성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충북자치도 산성의 위치·면적
2. 산성 문화재 지표조사 및 활용 실태의 공동연구
3. 충북자치도 산성의 관리 및 이용 계획
4. 사업추진의 목적 및 방향
5. 사업 시행 방식 및 기간
6.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61조(매장유산 발굴경비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충북자치도에서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2조(관광진흥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충북자치도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스마트관광 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을 충북자치도에 우선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3조(문화지구 지정·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의 해당하는 지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해당하는 지역

2. 문화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②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지구에 대한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법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도지사는 「농지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충북자치도 문화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2. 문화지구 내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권한은 「농지법」 제51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문화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⑤ 국가는 문화지구관리계획 및 문화지구조성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제 정 안

필요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문화지구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64조(문화환경 취약지역 등 우선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충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의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보조사업으로 지원한다. 충북자치도의 인접 시·도, 시·군·구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설치 또는 운영이 필요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시설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65조(야간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야간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야간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2. 야간관광산업 개발 및 홍보
3. 야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
4. 그 밖에 충북자치도의 야간관광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6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도 시·군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충북자치도 국제회의도시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정 안

1.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 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7조(외국인 도시민박업 내국인 대상 운영 완화 특례) 「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충북특화지구에서 운영하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1) 중원역사문화권 계승 및 지원(제57조·제58조)

제57조 및 제58조는 도지사가 중원역사문화권 계승·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산청 등과 공동연구 및 예산 지원을 통하여 중원역사문화권의 자원을 보존·활용하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매장유산 발굴·복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원역사문화권은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된 지역”으로,⁴¹⁾ 제57조와 제58조는

계획 수립과 공동연구·재정지원을 재량규정으로 두고 있어, 도의 자체 계획 수립 및 국가의 재량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2) 충북자치도 산성 육성·관리 및 이용계획(제59조·제60조)

제59조 및 제60조는 충북자치도 내 산성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관리·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산청과의 협력을 통하여 발굴·보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성 유적의 체계적 보존·활용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과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두 조항 모두 계획 수립과 지원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국가 및 충북자치도의 재정여건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량적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4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

- 가. 고구려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구려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나. 백제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다. 신라역사문화권: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와 통일 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라. 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마. 마한역사문화권: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바. 탐라역사문화권: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사. 중원역사문화권: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아. 예맥역사문화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자. 후백제역사문화권: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한편, 국가유산청은 제60조제2항제2호의 용어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산성 문화재 지표조사”라는 표현을 “산성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매장유산 발굴경비 지원(제61조)

제61조는 충북자치도에서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국가가 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유산 발굴에 관한 허가, 조사기준 설정 등 핵심 권한은 국가유산청장이 행사하는 국가사무이고,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원칙적으로 발굴을 허가받은 자 및 공사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⁴²⁾

4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를 전제로 할 때, 제61조는 충북자치도 관할구역에서 학술·공공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하여, 충북자치도 및 관할 시·군이 유적정비사업이나 공공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로서 허가를 받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특정 시·도 관할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발굴에 대해서만 국가의 재정지원 특례를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이미 일반적인 국비지원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법체계상 중복 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발굴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사비용 지원은 이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⁴³⁾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굴경비 지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 및 지자체 간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③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4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①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포장(包藏)된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해, 사태(沙汰),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매장유산의 발굴조사
 2. 보호·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 ②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장유산이 포장된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관광진흥에 관한 특례(제62조)

제62조는 국가는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충북자치도 관광진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같은 법 제47조의8 제2항에 따른 스마트관광산업⁴⁴⁾ 육성 사업을 충북자치도에 우선 추진하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국가 관광진흥계획과 스마트관광 관련 국가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는 중앙정부의 정책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에서 특정 지역을 계획 반영 및 사업 추진의 우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향후 국가 정책 수립의 자율성,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및 사업 선정의 공정성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계획과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사업이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써, 충북자치도에 대하여 계획 반영·우선 추진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관광진흥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4) 「관광진흥법」

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문화지구 지정·관리에 관한 특례(제63조)

제63조는 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법」상 문화지구 및 문화도시 조성 계획 대상지역 등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제2항),

문화지구 조성계획 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등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두고(제3항), 문화산업 조성 계획 시행자에 대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특례를 준용하도록 하며(제4항), 문화시설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제5항),

문화지구를 중심으로 토지이용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을 결합하여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다만, 제63조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3항은 문화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① 농업진흥지역 해제,⁴⁵⁾ ②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 위임,⁴⁶⁾ ③ 보전산지 행위제한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⁴⁷⁾ ④ 산림보호구역 해제⁴⁸⁾ 등에 관하여 현

45) 「농지법」 제31조제1항은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등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63조제3항제1호는 이와 별도로 충북자치도 문화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여 없이 도지사가 직접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46) 「농지법」 제51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63조제3항제2호는 문화지구 내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권한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특별법에서 명시하여, 문화지구 조성계획 추진 과정에서 농지전용 관련 의사결정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47)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는 각각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과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63조제3항제3호는 문화지구에 한정하여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및 경사도·표고

행 「농지법」,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상의 일부 절차·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인바,

농지, 산지 및 산림에 관한 규제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난개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전국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북자치도 문화지구로 한정하여 해제·전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공익 보호 취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개별 법령에 따른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 구조와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제3항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지구 지정 주체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제63조에서 문화지구 관련 규정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는 표현은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문화지구를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특례(제1호·제2호)를 인정하는 경우 식량안보 및 농업기반 보호,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전국적 관리체계의 통일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농지 관련 유사한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면 개별 조문에 분산하기 보다는 제정안 제68조⁴⁹⁾에서 일괄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등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완화·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지구 조성 계획 이행을 위한 산지 이용 규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48)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63조제3항제4호는 문화지구 내 산림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문화지구 조성계획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제 사유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산림청은 문화지구 조성을 사유로 보전산지 행위제한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거나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허용하는 특례(제3호·제4호)에 대하여, 산림 보호를 위한 기존의 전국적 기준, 다른 특별법상의 산림 관련 특례와의 형평성 및 산림관리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둘째, 제4항은 “문화지구” 조성계획 시행자에 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함으로써,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 시행자에게 인정되는 각종 부담금 감면 및 인·허가 의제 등⁵⁰⁾ 특례를 충북자치도 문화지구 조성계획 시행자에게 확대 적용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지구”를 “문화시설과 문화업

49) 제정안 제68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5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7조(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① 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면제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② 문화산업단지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25조제4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도지사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¹⁾

반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문화산업단지”를 “기업·대학·연구소·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기술훈련·정보교류·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서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조성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각종 부담금 감면(제27조)과 인·허가 의제(제28조)를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문화지구는 지역문화 향유·보존을 위한 생활·공간 중심의 지구인 반면, 문화산업단지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중심의 단지로서 그 성격과 입법목적이 상이함에도,

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전제로 설계된 부담금 감면 및 인·허가 의제 특례를 “문화지구 조성계획 시행자”에게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방

51)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 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식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목적 및 단지·지구 체계, 「지역문화진흥법」상 문화지구 제도의 취지, 그리고 전북·전남광주 특별법상 유사 특례와의 형평성⁵²⁾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셋째, 제5항은 문화지구관리계획 및 문화지구조성계획에 따라 설치·운영이 필요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

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보조금법 및 개별 부처의 사업계획·예산심의과정을 통하여 중앙정부가 전국적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고, 제63조에 따른 문화지구 관련 계획의 수립 주체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5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문화산업진흥지구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3.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351조(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이 집적된 지역
2. 군사시설 이전이 확정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 교양시설이 설치된 지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문화지구 관련 계획에 연동하여 국가 보조대상 범위를 법률로 직접 특정하는 방식은 국가의 보조금 사업 선정·조정 재량을 제약하여 보조금 제도의 독립적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음.

따라서 제5항의 필요성과 범위는 기존 지역문화·문화산업 관련 국비 지원 제도와 관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문화환경 취약지역 등 우선 지원 특례(제64조)

제64조는 충북자치도 내 문화환경 취약지역 및 광역 연계 문화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과 우선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다만,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은 이미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⁵³⁾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우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북자치도 관할구역만을 특정하여 보조사업 지원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특례가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 재정운용의

53)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국가 보조금의 지급 대상과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보조금법과 개별 부처의 사업계획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가 전국 단위에서 재량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1항을 임의규정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일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박물관, 미술관, 조각공원, 작은도서관,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제1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야간관광산업의 육성(제65조)

제65조는 도지사에게 야간관광산업 육성 시책을 마련·추진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가 충북자치도의 야간관광 기반시설 확충, 개발·홍보 및 공동 마케팅 등 야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야간관광산업 육성은 「지방자치법」상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⁵⁴⁾ 법률상 특별한 근거가 없더라도 충북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로 보임.

또한 전북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야간관광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규정을 두고 있고⁵⁵⁾, 제65조제2항이 국가의 지원을 재량규정 형태로 설계한 점을 감안할 때, 수용 가능성이 있는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국가가 추진 중인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⁵⁶⁾’이 이미 2025년에 10개 야간관광특화도시 선정을 완료하여 추가 선정이 곤란하므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제2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제66조)

제66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충청자치도 시·군을 국제

54)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5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야간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야간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야간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2. 야간관광산업 개발 및 홍보

3. 야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

4. 그 밖에 전북자치도의 야간관광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56)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야간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2022년부터 지자체를 공모·선정하여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지정하고 최대 4년간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현재까지 인천, 통영, 대전, 부산, 강릉, 전주, 진주, 공주, 여수, 성주 등 10개 도시 선정이 완료됨.

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제회의도시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⁵⁷⁾은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제66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 충북 관할 시·군에 대한 지정근거를 두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전북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를 두고 있으나 행정·재정적 지원의 주체에서 ‘국가’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⁵⁸⁾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9) 외국인 도시민박업 내국인 대상 운영 완화 특례(제67조)

제67조는 충북특화지구에서 운영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⁵⁹⁾에

57)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5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설치 취지를 살려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59)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박 등을 제공하는 업

대하여,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박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현행 「관광진흥법」 체계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① 기존 숙박업과의 형평 및 영업질서 보호, ② 도시 주거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공유 숙박 확산 방지, ③ “외국인 대상 가정문화 체험형 숙박”이라는 제도 목적 유지 등을 이유로 이용대상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의 취지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례 인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타 숙박업과 달리 관광객 문화체험을 위해 주택에서의 숙박을 허용하는 것으로, 특화지구라는 이유만으로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5. 지속가능한 농촌생태계 조성(제4편 제5장)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4편 제5장은 농업진흥지역, 스마트·친환경농업, 귀농귀촌 청년·중장년 정착, 농어촌유학, 돌봄, 전통시장, 인구감소지역 관광 등 농촌 관련 토지·인구·산업·복지 분야에 대하여 충북자치도 및 국가의 권한·재정지원 특례를 부여하여 농촌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임.

제 정 안
제5장 지속가능한 농촌생태계 조성 제68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농지감소율, 영농여건,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4천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충북특화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만 적용한다. 제69조(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지정의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지원거점단지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충북자치도에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70조(스마트농업데이터 정보활용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제 정 안

장관에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축
· 운영하는 플랫폼 중 충북자치도에 관련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를 관할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
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농업인·농촌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한 서비스 지원
2. 농업인 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상담 및 기술지도
3. 창업지원 및 신규 농업인의 정착지원
4. 그 밖에 충북자치도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1조(친환경농업 집적지구 활성화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
부장관과 협의하여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친환경농업 집적지구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2조(귀농어업인 초기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귀농어·귀촌 활
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간
(초기 지원기간에 한정한다)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간 내에 충북자치도로 이전하는 「귀농
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귀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
2. 귀농어업인 농어업 기술지도 사업
3. 그 밖에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3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충북자치도는 충북자치도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충북자치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
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충북자치도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 충북자치도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임차 비용을

제 정 안

지원하는 사업

4. 충북자치도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충북자치도 내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는 충북자치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제74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충북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5조(충북자치도 미래돌봄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충북자치도 미래돌봄특구(이하 “미래돌봄특구”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미래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6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충북자치도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충북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점가 활성화 지원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3. 주말시장의 지원
4.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해제

제 정 안

5.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6. 청년상인의 육성

7. 빈 점포의 활용 촉진

8. 상권활성화 지원

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② 도지사는 충북자치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충북자치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충북자치도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충북자치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7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지역은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1)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68조)

제68조는 충북특화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 및 관련 협의·기준 설정에 관한 권한을 「농지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국토부장관에서 도지사와 도조례로 이양하고,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면적을 4천만m² 이내⁶⁰⁾로 제한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으로, 충북특화지구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토지이용 조정과 규제완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같은 농업진흥지역 특례는 제주·강원·전북·전남광주에서도 유사 입법례가 존재하며, 특히 조문체계가 강원특별법⁶¹⁾과 매우 유사함.

다만, 전북이 농생명산업지구, 강원이 농촌활력촉진지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촌활력촉진특구 등 특정 농촌·농업 활성화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특례를 두는 반면,

충북은 호수·산림·문화·투자 등을 포괄하는 복합 목적의 충북특화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준의 권한 이양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충북특화지구의 구체적인 지정 범위·운영 방식에 따라 다른 지역보다 특례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장기간 정비해 온 농업진흥지역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해제 특례를 부여하는

60) 충청북도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52,928.1ha로, 제정안이 상정하는 특례 면적 제한인 4,000ha(4천만m²)는 전체의 약 7.6%에 해당하는 면적임(충청북도 고시 제2026-54호).

6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농지감소율, 영농여건,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4천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별도의 ‘농촌활력촉진특구(예시)’를 신설하여 그 특구 내에서만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허가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 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특례(제69조·제70조)

제69조와 제70조는 스마트농업지원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⁶²⁾ 지정 시 중복자치도를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스마트농업 데이터 플랫폼⁶³⁾ 중 중복 관련 데이터를 도지사 요청 시 제공·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의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및 현장 맞춤형 농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스마트농업지원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를 중복자치도에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69조는, 제주·강원·전북·전남광주에는 법률상 우선 지정 특례가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만을 명시적으로 우대하는 규정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정책의 전국적 추진과 시·도 간 형평성 측면에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해 보임.

6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63)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제70조제2항에서 농림식품부장관에게 도지사의 자료제공 요청에 ‘즉시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신속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데이터 제공 필요성 판단, 개인정보 보호, 자료 정제 등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절차를 고려할 여지를 두지 않는 측면이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공” 등 조문 정비를 통해 운영상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 지정을 충북 우선 특례가 아니라 조성계획 제출 및 장관 협의를 통한 일반 절차로 운영하고, 스마트농업데이터 제공도 현행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임의 규정으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활성화에 관한 특례(제71조)

제71조는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구에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주·강원·전북·전남광주는 주로 도 조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사업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및 단지를 조성·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북자치도에 한하여 법률로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의 우선 지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타 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단위 정책사업이므로, 충북자치도에 대한 ‘우선’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귀농어업인 초기 지원에 관한 특례(제72조)

제72조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초기 지원기간(현행 3년)⁶⁴⁾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 충북자치도로 이전하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기반시설·기술지도 등 지원사업에 국가가 재정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북으로의 귀농어업 유입과 조기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전북특별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는 유사한 유형의 사업을 도지사·통합특별시장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 우선지원 특례는 두고 있지 않은 점⁶⁵⁾을 고려할 때, 충북자치도에 한정

64)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6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 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간(지방자치단체의 초기 지원기간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하여 국가의 우선 재정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5)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제73조)

제73조는 국가와 충북자치도가 충북 내 청년·중장년 등의 취업·창업·주거·정착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가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제주·강원·전북·전남광주 특별법에는 지역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전반에 관하여 국가가 포괄적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특례가 부재한 점을 감안할 때, 충북자치도에 한정하여 이러한 지원 근거를 두는 것이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 청년정책의 통일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둘째,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이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

② 도지사는 귀농어·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
2. 귀농어·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3. 귀농어·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9조(귀농어·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귀농어·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
2. 귀농어·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3. 귀농어·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

원”, “창업 비용·기술·컨설팅 지원”, “주택·임차비 지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으로 다소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년’ 및 ‘중장년’의 연령 범위 또한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개별 법령에서 상이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지원 대상인 청년·중장년의 연령범위, 지원 항목, 국가·충북자치도 간 재원분담 원칙 등을 보다 명확히 정한 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셋째, 제2항의 “국가는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조문은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의 대상·수단·방식 등이 특정되지 않은 포괄위임적 표현으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주거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제74조)

제74조는 충북 지역의 농어촌학교로의 전학(농어촌유학)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도지사, 도교육감 및 시장·군수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촌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와 같은 농어촌학교 중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농어촌유학”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농어촌유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을 교육부장관,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은 원칙적으로 사익의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관한 노력 의무를 교육부장관에게 부과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특정 지역 농어촌학교로의 전학을 장려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농어촌학교와의 형평성 및 지역 간 교육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충북 지역 농어촌학교 우대정책의 타당성 및 공익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7) 충북자치도 미래돌봄특구 지정(제75조)

제75조는 도지사가 영유아·아동·장애인·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미래돌봄특구를 지정·운영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통합돌봄 체

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법에는 이와 같은 ‘돌봄특구’ 특례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는 유사한 특례가 규정⁶⁶⁾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특례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에 따라 미래돌봄특구 지정 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하여, 특구 내 돌봄사업과 학교 돌봄 간 연계·협력에 관하여 도지사가 도교육감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의 지원 사항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등’ 삭제)”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은 교육감 소관사항이며, 유치원돌봄 및 학교돌봄과 지자체가 제공하는 돌봄 간 연계·협력이 필요하므로, 특구 지정·운영 시 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협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0조(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통합특별시 돌봄특구(이하 “돌봄특구”라고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돌봄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돌봄사업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간의 연계·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돌봄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돌봄특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제76조)

제76조는 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⁶⁷⁾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국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법에는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지 않는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유사한 특례를 두고 있는 점⁶⁸⁾을 감안하여 해당 특례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6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347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점가 활성화 지원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3. 주말시장의 지원
4.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해제
5.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
6. 청년상인의 육성
7. 빈 점포의 활용 촉진
8. 상권활성화 지원
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10.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정안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하여 “전통시장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도 “전통시장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은 전통시장법 제5조에 따라 중기부에서 수립하는 시장·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9)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제77조)

제77조는 인구감소지역 중 농촌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의 관광산업을 우선 육성하도록 도지사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이미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이전 지원과 문화·예술·관광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관광 관련 규제완화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⁶⁹⁾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문화·관광기반의 확충) 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정안은 그 중에서도 농촌관광을 충북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의 우선적인 수단으로 삼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시하려는 취지로 보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고,⁷⁰⁾ 전북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을 산악관광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⁷¹⁾하는 입법례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특례는 수용 가능성이 있는 입법조치로 보임.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순회 문화공연·전시 등을 통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직접 제공하거나 문화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예술·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0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관광자원, 해양관광자원 등 특화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유원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을 인구감소지역 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이하 “산악관광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4-6. 지역주력산업의 성장동력 촉진(제4편 제6장)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4편 제6장은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과학기술·연구단지 및 투자·복합단지 지정과 지원, 신산업·창업·중소기업·서비스산업·외국인·교육 관련 각종 규제특례를 통하여 충북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6장 지역주력산업의 성장동력 촉진 제78조(공공기관 우선 유치 및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설치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시 충북자치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서로 합의하고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79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 정 안

제80조(충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충북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81조(연구산업진흥단지 조성에 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도지사는 연구산업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산업진흥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활성화 지원에 대한 특례) 도지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기능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국가는 개발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

제 정 안

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에 충북자치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복합단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충북자치도 내 지역 주력 특화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산업(「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말한다)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충북자치도 내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복합단지(이하 “복합단지”라 한다)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복합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소재·부품·장비산업 복합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제 정 안

제85조(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복합단지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3. 복합단지의 운영계획
4. 복합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계획
6. 사업추진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목표
7. 그 밖에 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6조(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연수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연수기관 내 부설기관으로 지역 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7조(복합단지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충북자치도는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등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교육 및 연수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복합단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88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육성) ① 국가 또는 충북자치도는 충북자치도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집중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 정 안

② 국가 또는 충북자치도는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2. 혁신적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3.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4. 그 밖에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 또는 충북자치도는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충북자치도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충북자치도는 신산업·기술 창업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9조(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① 국가 또는 충북자치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② 국가 또는 충북자치도는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4항 각 호의 부담금 중 제2호, 제7호, 제15호 및 제16호를 제외한 부담금
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제 정 안

제90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한정한다)과 같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91조(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충북자치도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산업 활성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촉진법」 제3장에 따른 서비스산업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충북자치도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92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첨단과학기술단지
2. 연구산업진흥단지
3. 투자진흥지구
4.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복합단지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제93조(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 ① 국가와 충북자치도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충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정 안

1. 바이오헬스산업의 인프라 조성 및 강화를 위한 지원
2.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성장 단계별 전주기 지원
3.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지원
4. 바이오헬스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5. 바이오헬스산업의 신기술 개발 지원
6. 바이오헬스산업의 국제교류·협력 지원
7.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94조(반도체,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① 국가는 충북자치도에 반도체 및 방산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의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 나.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2. 방산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방위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 나. 방위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 다. 기업 유치 및 지원
3. 반도체 및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신산업 기술 융합 지원
 - 나. 산업 간 협력 촉진

② 제1항 이외에 반도체,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충북자치도가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충북자치도 관할구역에 설치한 연구소 등을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정 안

제96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97조(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 시행의 허가·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8조(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충북자치도에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선도산업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9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1항·제2항·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0조(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창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 정 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지사가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1조(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업계와 대학 간의 협력(이하 “산학협력”이라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학협력 등을 영위하는 기관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산학협력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미래첨단산업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연구소·기업 간 연구개발 및 기술 이전
2.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교육 및 채용
3. 취업 및 기업 지원
4. 해외 우수 기술 및 인력 유치
5. 그 밖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2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① 충북자치도의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교육기관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은 「외국교육기관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3조(대학 지원에 관한 특례) 충북자치도 내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위하여 겸임교원을 학기 단위로 임용하거나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1) 공공기관 우선 유치 및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설치 특례(제78조)

제78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시 충북자치도에 적합한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기관의 장이 도지사와의 합의 및 도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에는 공공기관 우선 유치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음.⁷²⁾

후속 입법인 충북특별법에 유사한 우선이전 특례를 두는 경우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와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유사한 요구가 촉발될 경우 우선이전 규정이 사실상 전국적 일반규범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제2항은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기관이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과 공공자산의 적극 활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서, 공유재산법상 재산보전 원칙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을 조화시키려는

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4조(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점에서 기본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활용이 장기간 제한될 수 있어, 수의에 따른 매각 특례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 의견을 고려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특례를 두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⁷³⁾의 사례를 참고하여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방식과 수의 매각 특례 도입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2)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제79조)

제79조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강원특별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도 도지사(통합특별시장)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제2항의 준용 법률

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4조(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⁷⁴⁾

(3) 충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제80조)

제80조는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산업단지로서 충북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고, 그 지정·개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며, 해당 단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특화단지⁷⁵⁾로 지정되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임.

동 조는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의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특례와 대체로 유사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기본 취지는 타당하나,

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2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따른다.

7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이라 한다)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다른 입법례가 과학기술단지 조성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규정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정 요청 및 개발 참여 주체로 두고 있는 데 반해,⁷⁶⁾ 제80조제1항은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 권한 구조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정권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연구산업진흥단지 조성에 대한 특례(제81조)

제81조는 도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과기정통부장관과 도지사가 해당 단지의 기반시설·연구인프라 설치 등 활성화 사업 수행하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산업 집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7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북 및 전남광주 특별법에서는 도지사(통합특별시장)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연구산업진흥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제안’ 또는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단지·특구 지정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두고 있는 것과 달리,⁷⁷⁾

제정안은 도지사가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직접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의 예산 지원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어, 「연구산업진흥법」 체계와의 정합성, 다른 지역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활성화 지원에 대한 특례(제82조)

제82조는 도지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제과학벨트법”) 제8조⁷⁸⁾에도 불구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7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도지사는 생명경제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할 수 있다.

1. 새만금사업지역 중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9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한 지역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7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

기능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개발계획의 실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충북 기능지구에 대하여 충북자치도 차원의 별도 개발계획 수립과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능지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 국제과학벨트법 제3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및 지구 관리·육성계획의 수립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구 관리·육성계획 역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구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기정통부장관이 수립·고시하도록 하는 등 국가 주도의 계획 체계를 두고 있음.⁷⁹⁾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도지사가 별도의 기능지구 개발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국가 예산 지원을 직접 연계하는 특례는 국제과학벨트법상 기본계획 및 지구 관리·육성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하면서 현행 계획 체계와의 정합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기초연구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중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지원하는 경우 이미 구축된 연구·산업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지역간 협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제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을 관계기관 및 지구 소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⁸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능지구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명문화하고, 기능지구 개발계획의 범위와 세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제83조)

제83조는 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충북자치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하여 투자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 영향 분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출자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조항은 전북·제주 및 전남광주 특별법상의 투자진흥지구 제도와 기본 구조는 유사하나, 전북 등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종합계획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⁸¹⁾ 제정안은 도지사가 별도의

8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지구의 관리·육성계획(이하 “관리·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8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심의 절차 없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규모 인센티브 및 각종 규제특례를 수반할 수 있는 투자지구 지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사업성 검증을 위해 일정한 심의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특히 제정안 체계상 투자진흥지구는 충북특화지구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바, 제35조제1항제6호가 종합계획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충북특화지구 지정·변경 및 해제”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역시 충북특화지구의 지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제35조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는 것이 법체계의 일관성과 규정 내용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임.

(7) 복합단지의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제84조·제85조)

제84조 및 제85조는 충북자치도 내 국가·일반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 주력 특화산업과 연계된 소재·부품·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 복합단지를 조성·육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복합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단위의 복합단지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84조와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소부장산업 특화단지에

유리한 지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대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소부장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우선지정 특례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⁸²⁾ 제정안은 “지역특화 소부장산업 복합단지”라는 별도 개념을 두고 있어,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소부장산업 특화단지⁸³⁾와의 관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다른 지역의 우선지정 특례와의 형평성 및 제도 간 정합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제85조는 도지사가 5년마다 복합단지 진흥계획을 수립하되 국가 및 도가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복합단지 및 진흥계획이 소재부품장비산업법상 특화단지 및 국가 기본계획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조문상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산업통상부는 법정 용어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소부장산업 특화단지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8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 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8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업단지와 별도의 체계이므로 제84조제3항⁸⁴⁾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제85조의 취지상 진흥계획 수립은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는 입장임.

(8) 지역특화 소부장산업 전문교육기관 및 복합단지 지원(제86조·제87조)

제86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종사자를 위한 전문교육연수기관 및 부설 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87조는 국가와 충북자치도가 복합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숙소·편의·보육·복지·연수시설 등 부대 인프라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복합단지에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은 이미 소재·부품·장비 분야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⁸⁵⁾, 특화단지에 대한 시·도지사의 입지·재정·행정

84) (제정안 제84조) ③ 소재·부품·장비산업 복합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8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핵심전략기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대학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책 마련 의무⁸⁶⁾ 등을 규정하여 소부장 특화단지
지의 인력·인프라 지원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음.

제84조 및 제87조에서 사용하는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복합
단지”는 그 내용상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45조제1항⁸⁷⁾에 따른 “소재·
부품·장비 특화단지”와 기능·목적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개념으로 보이
며, 제87조제2항이 복합단지에 대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적용을 명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복 복합단지도 ‘특화단지’ 지원 체계에 편
입되는 구조인 것으로 이해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86조 및 제87조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상
특화단지에 적용되는 인력·인프라 지원 기능을 중복 복합단지에 다시
규정·강조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상위법이 이미 정한 지원 범위를 넘
어서는 새로운 특례를 부여하기보다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서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중복 복합단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법률 간 중복과 체계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
다고 보임.

5.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가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8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7조(특화단지육성시책) ④ 관련 시·도지사는 특화단지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
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
정할 수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이 특화단지 지원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입지·세제·재정·행정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제47조제4항), 복합단지 부대시설 설치·운영 지원은 원칙적으로 시·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므로, 제87조제1항의 지원 주체도 “국가와 충북자치도”가 아니라 소부장 특별법상 시·도지사의 역할과 정합성을 이루도록 도 중심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9)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육성(제88조)

제88조는 국가와 충북자치도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⁸⁸⁾의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체계를 충북자치도 차원에서 준용하여, 도지사가 해당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8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①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신산업·기술 창업을 한 창업기업등(이하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집중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2. 혁신적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3.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4. 그 밖에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신산업·기술 창업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89조)

제89조는 공장 설립계획 승인 창업기업 및 지식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을 사업 개시 후 10년 동안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는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제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사업 개시 후 7년 동안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⁸⁹⁾

제정안은 이러한 현행 부담금 면제 제도의 구조를 준용하되, 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충북 소재 창업기업의 재정부담을 추가로 경감하여 충북으로의 창업·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전국 단위로 이미 7년 면제가 보장된 상황에서 충북에 한정하여 10년까지 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지역 창업기업과의 형평성, 농지·산지 보전 및 개발이익 환수라는 부담금 제도의 본래 목적, 국가·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8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①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제4항 각 호의 부담금 중 제2호, 제7호, 제15호 및 제16호를 제외한 부담금
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각 부담금 소관 부처 및 기획예산처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소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취지상 부담금 감면 규정은 각 부담금 근거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북·강원 등 유사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충북자치도 소재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기간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 면제가 제외되는 부담금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제2항제2호의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산림청(대체산림자원조성비 소관)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특별법에서 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감면 사항은 이미 제정안 제40조에서 일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9조에서 중복 규율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11) 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제90조)

제90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⁹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충북자치도 관할 범위 내에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조치 및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전국 단위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판로지원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90조는 이러한 우선구매 요구 및 시정요구 권한 등을 충북자치도 내에서는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 차원에서 지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와 실적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9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취지로 이해되며,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둔 전북특별법 등 입법례⁹¹⁾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용 가능성이 있는 입법조치로 보임.

(12)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례(제91조)

제91조는 국가와 충청자치도가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책에 서비스산업 활성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실태조사,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규제특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서비스산업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서비스산업 관련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지원·규제특례를 충북 차원에서 종합·연계하여 지역 서비스산업 활성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관련 지역 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13)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제92조)

제92조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연구산업진흥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역 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 가

9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한정한다)과 같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능한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일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고급 외국인 연구·투자 인력의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 상한을 확대함으로써, 충북의 첨단 연구·투자지구에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치 및 장기 체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아울러, 전북·강원·전남광주 특별법에서도 외국인 사증·체류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⁹²⁾ 지역 간 형평성과 「출입국관리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 가능한 입법조치로 보임.

(14) 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제93조)

제93조는 국가와 충북자치도가 바이오헬스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 기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을 포함한 진흥 시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근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및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9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농생명지구
2. 복합단지
3. 문화산업진흥지구
4. 산악관광진흥지구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2023~2027년)”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주력·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투자, 인력양성, 규제개선, 수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임.

이러한 점에서 제93조는 국가 및 충북의 기존 바이오헬스 전략 방향과 대체로 부합하며, 충북자치도가 바이오헬스 인프라 확충, 창업·성장 단계별 전주기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정책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바이오헬스산업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개별 지역특별법에 두는 방식이 국가의 전국 단위 산업정책과의 정합성, 다른 시·도의 유사 요구 가능성 및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15) 반도체,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제94조)

제94조는 국가가 충북자치도 내 반도체산업 및 방산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상용화, 기업 유치·지원, 기술 융합·산업 간 협력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

정부는 K-반도체 전략,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반도체 관련 생산·연구 인프라 확충과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⁹³⁾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부품국산화 종합계획 수립 및 상생협력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도입 등을 통해 방산부품 국산화 거점 구축과 방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⁹⁴⁾

한편, 충북지역 역시 청주·음성·괴산 일원을 중심으로 ‘충북형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후공정 클러스터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모색하고 있는바,⁹⁵⁾ 제정안은 이러한 충북의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반도체·방산 클러스터 지원은 국가 단위 전략과 개별 법령을 통해 전국적 관점에서 설계·추진되고 있는 영역이므로, 특정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개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이 국가 전략과의 정합성 및 정책 운용의 유연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9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 2024.01.1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0676#pressRelease>

94) 연합뉴스, “정부·대기업, 중소기업 방산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비 지원”, 2026.03.11.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1045700504>

95) 충북일보, “충북형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본격화…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2025.12.21.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899773>

(16)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제95조)

제95조는 국가가 충북자치도에 설치된 연구소 등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양자기술산업법”)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연구센터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양자기술산업법은 산·학·연 연구 협력 거점 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과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종합계획 등을 통해 정부가 연구센터·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체계를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러한 현행 체계에서, 양자기술산업법 제18조제1항⁹⁶⁾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시 충북자치도 관할구역에 설치된 연구소 등을 우선 지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국 단위 전략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안인바, 특정 시·도 소재 연구소의 ‘우선 지정’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개별 지역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식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⁹⁷⁾ 양자기술산업법 체계 및 국가 정책과

9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① 정부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연구소를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이하 “양자연구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17)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96조)

제96조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및 대통령령·국토부령 위임사항 일부를 충북도지사 및 도조례로 이양하려는 것임.

현행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영하면서, 해당 구역에서 비행 허가·승인, 특별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관련 규제를 유예·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⁹⁸⁾ 드론시스템 실

제187조(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국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에 대한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설치한 연구소 등을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및 양자팹으로 지정할 수 있다.

9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2. 「항공안전법」 제68조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3.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4.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
 5.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
 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시험 등을 위한 드론시범사업구역 지정·관리⁹⁹⁾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두고 있음.

제정안은 드론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드론 실증·상용화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안전, 타 지역 공역(空域)과의 연계, 전국 단위 산업·규제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이므로, 국가의 지정·규제완화 권한을 특정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는 특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항공·안전 규제의 전국적 일관성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비행구역 지정은 공역 설정과 항공 안전관리,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드론시범사업구역에 대한 지정 권한을 현행과 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99)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실증·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드론시범사업구역(이하 “드론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드론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는 자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18)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97조)

제97조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시범운용구역 지정·변경·해제와 버티포트¹⁰⁰⁾ 개발사업 허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과 일부 위임사항을 충북도지사 및 도조례로 이양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현행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시범운용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고,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허가·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¹⁾

제정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지역 여건에 맞는 시범운용구역과 버티포트 개발을 보다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00) “버티포트”(Vertiport)란 도심형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10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범운용구역의 신청·지정·변경 또는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다만, UAM 시범운용구역과 버티포트는 국가 차원의 항공안전, 공역 관리, 전국 교통망·산업전략과 밀접히 연관되는 인프라인바, 안전·운항 기준의 전국적 일관성 및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권한 이양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버티포트 개발·시행 허가는 UAM 안전을 위한 법적·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현행과 같이 국토부장관의 권한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0)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98조)

제98조는 충북자치도에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¹⁰²⁾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국가는 해당 거점지구 조성·운영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0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거점지구 조성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거점지구에서 추진할 선도사업의 내용 및 지능정보기술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점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점지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선도사업의 추진·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이때 거점지구 조성 목표·전략, 추진체계, 선도사업 내용,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수립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제정안은 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주도적으로 지정·조성하고, 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충북형 디지털·AI 클러스터 추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선도사업 거점지구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전국 단위 전략과 통합계획에 따라 지정하도록 한 제도로써, 특정 시·도에 한하여 지정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지능정보화 기본법 체계와의 정합성, 국가 디지털 전략의 일관성 측면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1)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99조)

제99조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관리와 관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충청도지사 및 도조례로 이양하고, 국가가 해당 시설의 조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¹⁰³⁾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지원시설을 집적 유치한 건축물 등을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하고,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보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충북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SW 집적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도지사가 지정한 진흥시설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취소 권한은 도지사에게 부여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사전 협의·통보 절차를 두고, 세부기준은 도조례가 아니라 현행 법령 체계에서 운영하도록 제2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0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물을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22) 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제100조)

제100조는 도지사가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지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으로서, 유사한 구조를 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¹⁰⁴⁾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지구 내 기업 지원이 규제개선, 세제, 자금, 보육 등 여러 부처와 연계되는 종합 지원 성격을 가지는 점을 들어, 지원 주체를 특정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러한 견해와 선행 입법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04조제2항이 행정·재정적 지원 주체를 국가로 명시한 점을 종합하면, 제100조를 수용하는 경우 지원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아닌 국가로 정비하여 선행 입법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4조(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3)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제101조)

제101조는 도지사가 산학협력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국가는 해당 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인재 양성, 연구개발, 취업·기업 지원, 해외 기술·인력 유치 등 산학협력 관련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첨단산업과 연계된 지역 산학협력 거점을 육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산학협력 지구 지정과 국가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유사 특례는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만 규정되어 있고,¹⁰⁵⁾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에는 동일한 형태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충북자치도에 한정하여 이와 같은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다른 특별자치도와의 형평성 및 국가 산학협력 정책의 전국 단위 통일성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제2항의 “미래첨단산업 지역”은 제정안 전체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개념으로, 어떤 산업·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지 불분명

1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5조(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① 통합특별시장은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업계와 대학 간의 협력(이하 “산학협력”이라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학협력 등을 영위하는 기관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산학협력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3.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4.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5. 그 밖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하므로 해당 조항의 필요성 및 개념 정의와 관련한 추가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임.

교육부는 “미래첨단산업 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 및 판단기준이 부재하여 규정의 실효성이 충분치 않으므로 제2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4)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제102조)

제102조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주체를 행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상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외 영리·비영리 법인까지 확대하고, 내국인 입학 비율도 외국교육기관법 제10조 및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현행 외국교육기관법 체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은 외국학교법인(비영리)에 한하여 설립할 수 있고,¹⁰⁶⁾ 내국인 입학 허용 비율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 범위(학생정원의 30% 이내 원칙)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음.¹⁰⁷⁾

106)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10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102조는 이러한 설립 자격 및 입학 비율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격을 영리·비영리 국내외 법인으로까지 확대하고 내국인 입학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외국교육기관법이 경제자유구역·제주국제자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을 “외국 교육과정 제공을 통한 외국인·일부 내국인 대상 교육 서비스”로 한정하고 공교육 체계와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고,

강원특별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특례가 설립 주체를 여전히 외국학교법인으로 한정하되 승인 주체·절차, 일부 운영기준 등만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¹⁰⁸⁾

충북 경제자유구역에 한하여 설립 자격과 내국인 수용 기준을 더

제7조(학생의 정원)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1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3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통합특별시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⑧ (생략)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생략)

폭넓게 완화하는 것이 교육의 공공성, 외국교육기관법의 기본 구조, 그리고 다른 특별자치도 및 통합특별시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 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주체에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경우 교육의 상업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5) 대학 지원에 관한 특례(제103조)

제103조는 충북자치도 내 대학이 지역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위하여,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직원 구분 및 겸임교원 관련 규정¹⁰⁹⁾에

109)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교원등을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겸임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

도 불구하고 겸임교원을 학기 단위로 임용하거나,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제도에서 겸임교원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학별 비전임교원 규정 등에 따라 일정한 자격·임용절차·임용기간을 전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제14조의2제1항에서 교원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제정안은 충북 지역 대학이 산업 수요에 맞추어 현장 전문가 등을 겸임교원으로 채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고등교육법」상 교원 인사 체계의 운영 원리, 비전임교원의 처우 및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학기단위 임용을 허용하게 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겸임교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심의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겸임교원등으로 임용하는 경우

4-7. 지역간 연계협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망 확충(제4편 제7장)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4편 제7장은 충북자치도의 교통·물류·응급의료·재난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고, 각종 국토·교통·환경·주거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및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망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7장 지역간 연계협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망 확충 제104조(인접 자치단체간 간선 대중교통에 관한 지원) 국가와 충북자치도는 충북자치도의 시·군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5조(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관한 지원) 국가는 수자원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이 중복 적용되어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의 수질 보호를 위해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

제 정 안

정된 지역

제106조(광역철도 지정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충북자치도의 국가균형발전 거점지역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도시권 광역철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광역철도의 대도시권 범위를 초과하여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107조(복합환승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도 내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8조(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국가와 충북자치도 및 충북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9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충북자치도에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도지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제 절차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0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농지법」 제3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충북특화지구 내 농림지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1조(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사업의 범위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2조(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충북자치도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응급의료의

제 정 안

효과적인 제공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충북자치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충북자치도의 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의 공동 구축
4.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5.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충북자치도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3조(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의 공동 구축) ① 국가는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도지사와 적극 협력한다.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스마트 응급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스마트응급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의 소방본부 또는 시·군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응급환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내용 및 위치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응급의료 이용 실태 파악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도지사는 스마트응급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스마트응급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정 안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⑥ 충북자치도 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들은 스마트응급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환자 발생 현장에서 가까운 충북자치도 내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심정지 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 안내(약물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응급처치 안내를 시행한 영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스마트응급정보시스템에 보관 후 기간 종료일에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스마트응급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영상판독 및 응급처치 지원을 포함한 원격협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⑨ 국가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충북자치도에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4조(충북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 공동 활용)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북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을 설치하여 인접 시·도 및 시·군·구와 공동 활용하고 충북자치도는 관련 기술을 관련 기관·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충북자치도 소방본부 소속 구급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충북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한다.

1. 심장정지환자의 신속한 구조 필요 시
2.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병원 선정 필요 시
3.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 간 전원 필요 시
4. 응급환자 이송 중 영상의료지도 필요시

③ 도지사는 충북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북형 스마트응급의료사업단을 충북자치도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북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 관리 및 기술제공
2. 충북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 통계 관리
3. 충북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 운영 교육

제 정 안

4. 중복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의 공동 활용 계획 수립

5. 기타 중복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의 발전 계획 수립

④ 국가는 중복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 기반의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가 확산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5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특례) ① 도지사는 중복자치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복자치도 내 일부 지역에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용 심의를 위하여 중복자치도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에 관한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용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용 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규정은 중복자치도 내 유상운송 허용과 관련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부터 제88조까지는 중복자치도 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받은 사업자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제116조(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중복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7조(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에 따라 중복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한다.

③ 국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수입금을 중복자치도로 이관하는 경우 국가도로 철도망 계획에 따른 국비투자 계획과 관할구역 내의 수입금을 추계하여 그

제 정 안

규모를 상호 비교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충북자치도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을 신설·운용한다.

제118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충북자치도와 협의를 통하여 국고보조 등을 상향할 수 있다.

② 충북자치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9조(생활환경·경관의 개선) ①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사회재난·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0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특례) 충북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에서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충북특화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2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내 개발구역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1) 인접 자치단체간 간선 대중교통에 관한 지원(제104조)

제104조는 충북자치도 관할 시·군 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충북자치도가 해당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전북특별법¹¹⁰⁾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¹¹¹⁾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군 간 대중교통 공백·취약지역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지역특별법에서 별도로 두는 입법례가 존재함.

다만, 전북·전남광주 입법례가 “벽지노선 운행 손실의 일부 지원” 등으로 대상을 비교적 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104조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지원 범위가 과도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시·군 간 대중교통 공백·취약지역의 벽지 노선 운행 등 일정 범위의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 근거로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방향으로 조

11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4조(대중교통 운영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전의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를 걸쳐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문을 정비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다른 특별법 입법례 및 상위 법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임.

(2)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관한 지원(제105조)

제105조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국립공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두 개 이상 중첩되어 개발이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¹¹²⁾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제도상 상수원보호구역, 4대강 수계 수변구역, 댐 주변지역, 국립공원·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에 대해서는 「수도법」, 4대강 수계 관련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근거한 주민·지역 지원사업이 각각 운영되고 있음.

제정안은 수자원·산림 보호를 규제가 중첩되어 개발이 구조적으로 제약된 지역의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규제에 따른 부담을 사회기반

1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시설 우선 지원 방식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이미 개별법에서 규제지역별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지역 특별법으로 “요건 2개 이상 중복 지역”을 이유로 사회기반시설 비용의 우선 지원 근거를 별도로 두는 경우, 다른 규제지역과의 형평성, 지원체계 중복 및 이중보상 가능성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대상 지역의 범위 설정 및 기존 지원 제도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공원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에 한정된 법령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 아래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전북·강원·제주·전남광주 특별법에도 유사 입법례가 없으므로 제5호(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광역철도 지정에 관한 특례(제106조)

제10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충북자치도의 국가균형발전 거점지역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2조제2호¹¹³⁾상 대도시권 범위를 넘어서는 구간도 광역철도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다만, 국토교통부는 현행 광역교통법 체계에서 일부 구간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광역철도 지정 여부는 노선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인바,

제106조가 새로운 실체적 권한을 부여한다기보다는 충북자치도에 대한 기대·우선 고려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상위법상 재량 범위를 전제로 그 필요성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도청소재 대도시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둘 이상의 시·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라 한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4) 복합환승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제107조)

제107조는 도지사가 충북자치도 내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제1항은 복합환승센터를 국가기간·광역·일반으로 구분하고,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¹¹⁴⁾ 충북도지사 역시 원칙적으로 법정 절차에 따라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럼에도 제정안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사용하면서 도지사의 지정권한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행 제도와 비교한 실질적인 완화나 특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조문 제목에서 ‘특례’를 삭제하거나 특례로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11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복합환승센터: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일반복합환승센터: 시·도지사가 지정

(5)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제108조)

제108조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충북자치도 및 관내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청주국제공항은 최근 이용객이 연간 400만 명을 상회¹¹⁵⁾하는 등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하고 있고, 정부 항공정책 및 지방공항 활성화 측면에서도 지방공항 지원과 지역균형발전의 연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¹¹⁶⁾ 국가와 지방이 협력하여 공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는 타당성이 있어 보임.

(6)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제109조)

제109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제1항¹¹⁷⁾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당 구역이 충북자치도에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도지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115) 세계일보, “청주국제공항 2025년 이용객 467만명 ‘역대 최다’”, 2026.01.12.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111509754>

116) 한국교통연구원, 「적자 지방공항의 효율적 운영 전략」, 수시연구보고서, 2023.03.24., 박진서·김해빈

1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해제 절차는 개발제한구역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체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권한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비수도권의 일정 규모 이하(현행 기준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해제 권한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¹¹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 등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입안·제안하고 관계 절차를 거쳐 해제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제정안은 이러한 현행 체계에서 사업시행자의 제안 경로에 도지사를 명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에도 개발제한구역법상 해제 절차(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그대로 따르도록 내용으로 이해되는바, 현행 제도에 비추어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100만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이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협의 과정에서 도지사가 관

1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이거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109조가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와 시·도지사 간 기존 위임 구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오해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제 권한 행사 방식과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짐

(7)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제110조)

제110조는 충북특화지구 내 농림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융복합시설에 한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용도변경·공작물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법」, 국토계획법의 일반적 토지이용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농지법」 제32조는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농업 생산·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 외 토지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¹¹⁹⁾ 국토계획법

119)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복원·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76조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시설의 용도·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정하며, 농촌융복합산업법은 농업·가공·체험·관광 등이 융합된 농촌융복합산업과 해당 시설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농업·관광·체험이 결합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토지이용 규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것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다각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농지법 및 국토계획법이 전국 단위에서 농업진흥지역·농림지역 보전을 엄격히 관리하는 기본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북특화지구 내 농림지역에 한정하여 건축·용도변경·건축물설치를 폭넓게 허용하는 특례는, 농지·농림 보전 원칙, 타 시·도 및 다른 특별자치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 등을 통해 농림업과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용도지역이므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축제한을 완화할 경우 난개발, 환경훼손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국가 단위 식량안보 확보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등은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제정안 제68조(농업진흥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의 농촌 활력촉진특구로 관련 특례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8)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한 특례(제111조)

제111조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사전심의의 받아야 할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달리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중앙·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사전심의의 받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기준·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¹²⁰⁾

재해복구 사전심의가 부실·중복투자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국 단위 안전규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북자치도에 한하여 범위·절차를 달리 정할 필요성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달리 정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입법 취지가 조문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재난복구 사업 관리의 일관성·안전성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는 피해원인 분석 및 설계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므로, 그 대상·절차를 「자연재해대책법」 시

120)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절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절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의 사전심의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령」 등에서 규정된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충북특별법에 별도 범위·절차를 두면 심의 대상 축소나 절차 생략 등으로 인하여 제도 취지 훼손, 부실 복구 및 재피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9)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제112조)

제11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¹²¹⁾에 충북 자치도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충북자치도의 응급의료 현황, 이송체계,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구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제1항은 전국 단위 기본계획에 특정 지역을 명시하는 것으로

1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홍보 계획
-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 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지원 및 육성 계획
- 다.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
- 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계획
- 마.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
- 바.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대응 계획

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 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
- 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

서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이를 별도 조문으로 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전국 단위 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계획이므로, 특정 시·도에 관한 사항만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충북자치도 관련 사항에 관하여 “고려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10)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공동 구축 및 활용(제113조·제114조)

제113조 및 제114조는 충북자치도가 “스마트응급정보시스템” 및 “충북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119 구급대·소방본부와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의 수집·분석·연계, 심정지 환자 등에 대한 현장 영상 응급처치 안내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대상 원격협진 등을 수행하고, 인접 시·도 및 시·군·구와 관련 시스템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는 이러한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¹²²⁾ 이를 기반으로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응급의료정보

제공 시스템(E-gen) 등 국가 차원의 응급의료정보망과 119 - 응급의료 기관 연계 시스템이 이미 운영되고 있어, 충북자치도 역시 현행 제도 하에서 응급환자 정보 공유, 이송 병원 선정 지원, 원격 자문 등 국가 공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한편, 충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해 119 상황실·구급대·병원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응급환자 재이송률 감소 및 이송시간 단축 등 일정한 효과를 보였다고 언론 등에 소개된 바 있으며,¹²²⁾

제정안은 이러한 충북형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를 법률상 근거를 갖춘 정보시스템으로 제도화하고, 인접 시·도 및 시·군·구와의 공동 활용 및 국고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로서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은 기존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기능·투자 측면에서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시스템 간 연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 관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바,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의 실증 성과와 전국 확산 필요성, 국가·지

1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2.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123) KBS뉴스, ““응급실 뽕뽕이 막는다”...전국 최초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2023.09.1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77651>

방재정 부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특례(제115조)

제115조는 충북자치도 내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81조제1항¹²⁴⁾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심의를 위하여 충북자치도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를 두며,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자가용 사용 제한·금지(제83조제1항 각 호) 및 일부 벌칙 규정(제84조부터 제88조까지)의 적용 범위를 충북 내 허가받은 유상운송 사업자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출퇴근 카풀 등 예외적 사유를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제81조제1항제1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및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1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술,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하는 등 자가용 기반 유상운송에 대하여 엄격한 규율을 두고 있음.

제정안은 이러한 체계 아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충북 일부 지역의 자가용·렌터카 기반 유상운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관광수요가 있으나 택시·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가 택시 등 기존 운수사업과의 형평성, 안전·보험, 불법 영업 차단 등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엄격히 관리되어 온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¹²⁵⁾ 충북 지역에 한정된 특례 허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규제 일관성 및 향후 유사 요구 확산 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가용 유상운송 특례로 얻을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 운수업계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곤란에 따른 승객 안전 저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25) 우버X 및 타다 베이직 등 자가용·렌터카 기반 플랫폼 운송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유상운송 금지)·제83조(사용 제한·금지)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택시업계와의 형평성, 안전·보험, 불법 영업 차단 문제에 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하였고, 2020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7173호)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규제가 도입되면서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가 축소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도가 신설되는 등 자가용 기반 유상운송 영역을 전국적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정비된 바 있음.

(12) 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제116조)

제116조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통합교통체계법”) 제37조126)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충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통합교통체계법 제37조는 교통물류거점을 제1종(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제2종(시·도지사 신청 후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제3종(시·도지사 지정)으로 구분하고, 공항·항만·철도역·복합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대규모 교통·물류 거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러한 체계에서 충북도지사의 지정 요청에 법률상 “우선

12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2. 제2종 교통물류거점: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 이 경우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3종 교통물류거점: 시·도지사가 지정·고시
-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는 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계교통시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 ④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고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영” 의무와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의무를 부여하여 충북을 교통·물류 거점으로 우선 육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교통물류거점은 국가기간교통망의 효율성과 연속성, 전국 단위의 수요·효과 분석을 고려하여 지정·조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시·도의 요청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특례는, 유사한 수요를 가진 다른 시·도와 의 형평성, 국가기간교통망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량과 중립성, 향후 타 지역의 동일·유사 특례 요구를 촉발할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충북도지사의 교통물류거점 지정 요청에 대하여 “우선 반영”이 아닌 “우선 검토”로 특례 수준을 조정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3)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한 특례(제117조)

제117조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 충북자치도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관련 수입을 도지사가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충북자치도 자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분권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국가 교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가회계 내에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입의 징수·배분·집행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두고 있으며,¹²⁷⁾ 지방자치단체는 이 회계로부터 국비 보조 및 국고 지원을 받는 수혜자의 위치에 있음.

제정안은 충북자치도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관련 수입을 도가 직접 관리·운용함으로써 충북의 교통 인프라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교통시설특별회계가 본래 전국 단위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세 및 각종 수입을 종합 관리하는 국가회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지역에 한하여 수입의 관리·운용권을 이관하는 것은 국가 및 다른 시·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가기간교통망 투자 우선순위 결정의 일관성·중립성 저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세인 교통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수입금을 충북자치도가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재원배분 결정에도 도지사만 참여시키는 제정안은, 국세 관리 원칙과 교통회계의 전국 단위 투자 기능에 부합하지 않으며, 교통세 징수지역 편중 및 타 시·도 및 전국적 사업 투자 위축, 특정 지방자치단체 참여로 인한 재원배분의

127)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용) 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항공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운용한다.

편향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4) 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관한 특례(제118조)

제118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66조¹²⁸⁾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도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충북자치도와의 협의를 통해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 등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통상적인 부담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재난안전법 체계에서는 재난복구사업비 및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준을 재난 유형·피해 규모·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고 추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⁹⁾

1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1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안은 이와 별도로 충북자치도에 대하여 국고보조 비율 상향 및 부담 기준 적용 제외를 협의에 따라 허용함으로써, 충북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 국가가 보다 높은 수준의 국비를 투입하거나, 현행 기준상 국고 지원 대상이 아닌 재난에 대해서도 예외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재난복구비 부담 기준과 국고보조 비율 등은 재난 발생 시 지역 간 형평성과 중앙·지방 간 재정부담의 균형, 재난관리 책임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통일적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에 대하여 국고보조 상향 및 부담 기준 예외를 별도로 허용하는 것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국가 재정운용의 일관성 및 향후 유사 특례 요구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복구비용 국고보조와 관련하여 보조 항목, 피해 규모, 지자체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특정 지역에 한정된 재난복구비용 특례를 법률에 규정할 경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15) 생활환경·경관의 개선(제119조)

제119조는 국가로 하여금 충북자치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편의시설 설치, 사회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이용,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충북자치도의 정주 여건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법률상 우선지원 근거를 두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노인복지시설, 재난 및 범죄예방 시설, 경관·환경 개선 사업 등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역이고, 이미 개별 법률과 예산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투자하고 있는바,

특정 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유사한 생활환경 개선 수요를 가진 다른 시·도와의 재정지원 형평성, 향후 타 지역의 동일·유사 특례 요구 가능성, 복지·생활 SOC 인프라 투자의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특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특례(제120조)

제120조는 충북자치도 관할구역 중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¹³⁰⁾에 따른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준공 후 일정 연한이 지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구조 안전성, 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음.

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¹³¹⁾에 따른 정비구역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시 이러한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 기간과 비용을 줄여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안전진단 제도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무분별한 재건축 억제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바, 인구감소를 이유로 일정 연

1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① 시장·군수등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한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진단 면제를 허용하는 경우, 안전성 점검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유사 환경을 가진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진단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 착수 가능 시기와 직결되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21조)

제121조는 충북특화지구 내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120 범위에서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및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¹³²⁾ 같은 법 시행령은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따라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건폐율·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면서도, 완화된 수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음.

제121조는 이러한 일반 규율과 별도로 충북특화지구에 한하여 법률상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최대 120%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충북특화지구 내 개발 밀도 완화를 통한 투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 제43조에 따른 충북특화지구는 호수진흥지구, 산림이용진흥지구, 문화지구, 투자진흥지구뿐 아니라 “그 밖에 필요한 지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지구 전반에 일률적으로 건폐율·용적률 상한 완화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이 용도지역·용도지구별로 설정한 밀도 관리 기준과의 관계, 기반시설 수용능력, 경관·환경·일조권·안전 등과의 조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
-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 (이하 생략)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1.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 2. 관리지역
 -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폐율·용적률이 도시기반시설 용량과 환경·경관 등에 직결되는 주요 도시관리 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개별 특별법에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상한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의 특례 도입은 향후 다른 지역·특별법과의 형평성과 국토계획체계의 일관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8)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122조)

제122조는 도지사가 역세권 개발구역에 대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 및 국토계획법에도 불구하고,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역세권법 제8조는 개발구역의 복합적·입체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역세권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용적률의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¹³³⁾

13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의 복합적·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은 이러한 역세권법상 특례를 전제로 하여, 충북도지사가 역세권 개발구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충북특별법에 명시함으로써, 역세권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와 고밀·복합 개발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¹³⁴⁾ 및 국토계획법과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하여, 건폐율·용적률의 완화 가능한 범위와 기준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국토교통부도 역세권 개발 시 허용 가능한 용도지역 변경 범위와 건폐율·용적률 완화 수준을 국토계획법 및 역세권법 체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③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지정권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9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내 개발구역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 탄소중립, 환경친화 등 지속가능발전(제4편 제8장)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4편 제8장은 충북자치도에 대하여 에너지 전환, 신재생 및 수소에너지 단지 조성, 환경·자연경관·기후변화·건강영향평가 권한의 이양 및 농지·환경 관련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제 정 안
제8장 탄소중립, 환경친화 등 지속가능발전 제123조(수열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농지법」 적용의 특례) 도지사는 「농지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124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도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충북자치도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5조(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 지정 특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제 정 안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6조(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7조(수소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 실현 및 수소경제사회 촉진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수소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는 수소특화단지 내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특화단지의 기반 조성,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8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3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5조, 제46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

제 정 안

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친환경 개발 및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29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북자치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제130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131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특례)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나. 검토의견

(1) 수열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농지법」 적용 특례(제123조)

제123조는 수열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을 식량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엄격히 관리하면서, 제30조·제31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협의 절차를 전제로 농업진흥지역 및 용도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전북·강원 및 전남광주 특별법은 농촌활력촉진지구·특구 및 농생명지구 등 특정 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및 농지전용 관련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거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특정 에너지 시책과 직접 연계된 특례는 두고 있지 않음.

제정안 제123조는 이미 안 제68조에서 강원·전북 등과 유사한 농업진흥지역 포괄 특례를 규정한 상황에서, 수열에너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개별 목적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다른 특별법과의 형평성, 농지보전 원칙, 제68조와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난개발 방지와 국가 단위 식량안보 확보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등은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제정안 제68조의 농촌활력촉진특구로 관련 특례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제124조)

제124조는 도지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30조¹³⁵⁾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지역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탄소중립기본법 제30조는 정부가 같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충북자치도 차원에서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을 자율적·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에너지 전환 촉진과 에너지분권 강화라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취지에 대체로

13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 전국 단위의 종합계획과 특별자치도 지역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기후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3)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 지정 특례(제125조)

제125조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해당 단지를 지정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¹³⁶⁾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러한 집적화단지 조성·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충북자치도의 재생에너지 집적화 전략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집적화단지 제도의 전국적 운영 기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지원 의무화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13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고려하여 특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적화단지 지정은 지자체 신청, 기후부 평가·심사의 후 지정으로 진행되며 모든 지자체에 공통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지역에만 별도의 지정권한 부여시 국가의 공정한 평가·심의를 통한 지정체계가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특례(제126조)

제126조는 도지사가 신청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 경미한 변경에 관한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여 특화지역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만, 제1항의 ‘우선 지정’은 충북자치도가 신청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신청보다 앞서 심사·지정하도록 하는 우대규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지정 심사의 중립성·공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 단위에서 전력 생산·공급과 관련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지정되는 것으로, 특화지역을 희망하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127조)

제127조는 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단지 내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하며, 국가가 단지 기반조성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특화단지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¹³⁷⁾ 「전기사업법」 제31조는 원칙적으로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여¹³⁸⁾ 직접거래를 제한하고 있음.

제정안은 충북의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수소특화단지 내 전력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특정 시·도에 대한 수소특화단지 ‘우선 지정’과 전력시장 외 직접거래 특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전력시장·요금체계에 미치는 영향, 수소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특화단지는 수소산업의 집적화 유도를 위하

13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38)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법적 제도로, 법적 요건과 국가 수소산업 정책을 고려하여 평가 후 지정할 필요가 있어 특정 지역 우선 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제128조)

제128조는 충북자치도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평가·세부기준 설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도조례, 환경영향평가위원회,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통해 도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전북·강원·전남광주 특별법과 유사하게¹³⁹⁾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되, 안 제33조에 따른 충북자치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지역의 계획·

13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3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구에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과 도지사가 승인한 제4호의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농생명산업지구
2.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산업진흥지구
3. 제50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4.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승인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5조, 제46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산업·환경 여건을 반영한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과 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은 중앙부처에서 협의하고, 충북자치도의 자체사업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한 조항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7) 자연경관·기후변화·건강 영향평가 등 특례(제129조~제131조)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는 제128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연경관, 기후변화영향, 국민건강영향 관련 협의·검토 권한을 각각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 탄소중립기본법, 환경보건법에 산재해 있는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권한을 제128조 대상 사업에 한정하여 일괄적으로 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개별 사업마다 중앙·지방을 오가며 중복 협의를 거치는 비효율을 완화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기후·건강 영향 검토가 종합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5. 보칙 및 벌칙(제5편)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5편은 도지사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검사(제132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승인 취소·정지, 공사중지, 시정명령 등 감독과 그에 앞선 청문 절차(제133조·제134조), 중앙·지방 간 권한 위임(제135조), 거짓 승인에 대한 형사벌(제136조), 감독·자료제출·검사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제137조) 등을 규정하여, 이 법에 따라 추진되는 특례·개발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본적인 행정통제와 제재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5편 보칙 및 벌칙 제132조(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면 제36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33조(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정 안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4조(청문) 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5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과태료) ① 제133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2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나. 검토의견

보칙 및 벌칙조항은 이 법에 따른 각종 특례·개발사업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일반적 행정통제·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구조는 다른 지역 특별법과 대체로 유사하나, 전북·강원 특별자치도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일부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보칙 부분(제132조~제135조)은 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출입·검사, 거짓 승인·법령 위반 등에 대한 승인 취소·정지,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 청문 절차, 중앙·기초지자체로의 권한 위임 등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법 일반원칙과 전북·강원특별법의 감독·청문 규정과 큰 틀에서 유사하며,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전북·강원 특별자치도법이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 방지, 권한 이양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징수 방식,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보칙을 공통적으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북특별법에서도 충북자치도 전환에 따른 조직·권한 구조를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보칙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제136조(벌칙)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36조가 “사업시행자”를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로 정의하고 있어, 제136조에서 말하는 “사업시행계획”은 문언상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 하에서 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은 사업 계획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다만,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는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이미 별도의 인·허가 및 벌칙 체계가

마련된 사업들이 혼재할 수 있는바,

제136조가 이러한 모든 사업시행계획을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포섭할 경우, 형벌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게 설정될 수 있고, 개별법에 따른 제재 수준 및 벌칙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벌칙의 대상이 되는 사업시행계획의 범위를 이 법에 따라 별도로 승인하는 특정 유형의 사업으로 한정하거나, 적용 대상을 자치감사·위원회 운영 등 이 법 고유의 영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형벌 규정의 범위·수준을 개별법 체계와 조화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전북·강원·제주 및 전남광주 등 다른 지역 특별법이 자치감사와 관련한 감사 거부·방해,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별도의 벌칙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¹⁴⁰⁾ 충북특별법에서도 자치감사 관련 최소한의 벌칙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유사 입법례와의 정합성 및 자치감사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14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123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6. 부칙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부칙은 이 법의 시행시기(제1조), 종전 충청북도의 폐지(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충청북도지사의 준비행위(제3조), 종전 충청북도지사·도의회 의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 인가·허가 등 행위와 조례·규칙, 사무·재산·권리·의무, 소속 직원·위원의 포괄 승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제5조), 도조례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제6조)를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에서 충북특별자치도로의 전환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충청북도의 폐지) 종전의 충청북도를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 법 시행 전 충청북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충청북도지사 및 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충북특별자치도지사(충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충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충청북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충북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

제 정 안

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북도의 조례·규칙은 이 법에 따른 충북특별자치도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충북특별자치도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다만, 임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충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로 위촉·임명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의 사무와 충청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충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충청북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여 온 재산, 기금, 금전 급부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충북특별자치도가 승계한다. 다만, 충북특별자치도가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서 충북특별자치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북도가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충북특별자치도 도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부칙은 종전 충청북도의 폐지, 단체장·의원·직원의 지위 승계, 인가·허가 및 조례·규칙의 효력 유지, 재산·사무·권리·의무 승계 등 특별자치도 전환에 필요한 기본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전북·강원특별법과 큰 틀에서 유사하며 기본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전북·강원의 입법례를 참고할 때,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적용을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경과조치와 다른 법률에서 “충청북도·충청북도지사 등”을 인용한 부분을 “충북특별자치도·충북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간주하는 포괄적 인용 규정 등의 보완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⁴¹⁾

국무조정실은 지원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은 법 시행 전 조기 설치하여 충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10조에 대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

¹⁴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생략)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및 도조례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